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요약본]

2016. 12.

본 연구(안)은 현재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구상하기 위해 작성한 연구(안)으로 실제 정책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실제 정책사업 추진 시에는 최종확정(안)에 근거하여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문화도시 정책	01
1. 정책 추진배경	01
2. 정책 개념 및 방향	03
II. 문화도시 지정	07
1. 문화도시 지정기준	07
2. 문화도시 지정절차	09
III. 문화도시 사업	19
1. 사업지원 근거	19
2. 사업 기본구성	20
3. 사업유형 및 추진체계	23
4. 사업예산 및 회계구조	25
IV. 문화도시 추진계획	28
1. 정책목표 설정	28
2. 정책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성	29
V. 정책 및 사업 활성화 지원계획	32
1. 정책사업 연계 및 복합	32
2. 도시브랜드 및 가치효용 극대화	38
3. 문화도시 전문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40
#별첨 1 - 문화도시 지정방안 근거 및 세부내용	47
#별첨 2 - 문화도시조성계획 구성목차 준거 가이드라인	51
#별첨 3 - 문화도시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및 지정심의 주요내용	53
#별첨 4 - 문화도시 사업구성	55

1. 정책 추진배경

□ 사회문제 치유·회복에 대한 문화가치의 가능성 및 중요성 인식

- 현대사회에서의 도시획일화, 물인간적인 도시공간 문제 야기
 - 사회에서 계층 / 세대 / 지역 간 도시문제 발생 및 회의적 인식 팽배
 - 물질만능주의적 도시적 삶의 관계회복에 있어 문화의 매개작용 중시
- 삶의 장소로서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 구축 필요
 -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삶을 이해하는 도시문화가 중요하게 대두
 -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유대감에 기반하는 새로운 도시가치 제시 필요

□ 국제의제로서 문화중심의 도시가치에 대한 이슈 논의 및 주목

- 문화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문화도시 추구
 -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 도시발전의 원천적 가치동력 제고 필요성 대두
 - 문화의 창조성과 다양성에 근거하는 도시성장 및 경쟁력강화 필요성 인식
- 미래 도시성장 및 발전의 주요 이슈로 문화적 도시가치 논의
 - 국제회의 의제로서 새로운 시대 사회패러다임에 “도시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의 발현”이 주요 이슈로서 논의
 -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국제의제로 문화 중심의 도시가치 발현에 주목

다보스 포럼('16년/17년) [Davos Forum]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구조에서의 소통과 책임의 리더쉽 강조
유엔 해비타트Ⅲ 총회('16년) [UN-habitⅢ]	새로운 도시의제로 '도시권을 보장하는 도시', '모두에게 적절하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도시',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정주가치 강조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04~현재)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도시의 가치생성과 지속가능 기제로 문화가치 기반의 사회경제 생태계 구축과 이를 통한 사회가치 창출을 중요하게 논의하고 도시간 사회·경제·문화적 협력을 강조
세계도시문화포럼 회의('15년) [World Cities Culture Summit]	세계 도시에서 문화와 창의력의 중요성, 사회발전의 깊은 관계를 인식·고찰하고 도시 문화정책에 대해 논의 및 강조

□ 문화적 도시의제가 국가정책으로 정착되지 못한 국내적 상황

- 지역문화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한 도시단위 정책방안 필요성 대두
 - 지역 및 도시 간 문화 및 생활격차 심화에 따른 문화불균형 심화
 - 지역 문화특화 및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문화정책 필요성 대두
- 기존 문화도시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발생 및 한계 인식
 - 지역거점문화도시(전주·경주·공주·부여)는 법근거 미비, 정책관리수단 부족, 예산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약화 및 추진동력 소실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특별법에 의거 국가정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 도시단위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 및 지원 중
-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도시 지정-지원-관리 정책방안 필요
 - 문화도시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총괄적인 정책방안 구상 및 마련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도시의제로 '문화도시 지정' 기대

- 법 제4장에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이 정식제도로써 명시
 - 지역문화가 집약되는 총체이자 미디어로서 문화도시 지정을 제시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화도시 지정 및 관리는 중앙정부 책무로 제시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도시문화정책 근거이자 제도로 정식화
- 현재 각 지역에서 문화도시 지정이 이슈화되고 이를 위한 논의 중
 - 각 지역 도시에서 총체적 문화성장 및 삶의 질 향상 필요성 인식
 - 국내 각 도시에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방법론으로 '문화도시'를 새로운 도시의제로 채택하고 도시 지정 및 지원을 기대

□ 사회공감 및 발전을 위한 미래적 국가정책으로 문화도시 필요

-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이자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정책수단으로 문화도시정책 추진 필요
- 미래사회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핵심요체가 되는 도시단위 문화사업으로 문화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정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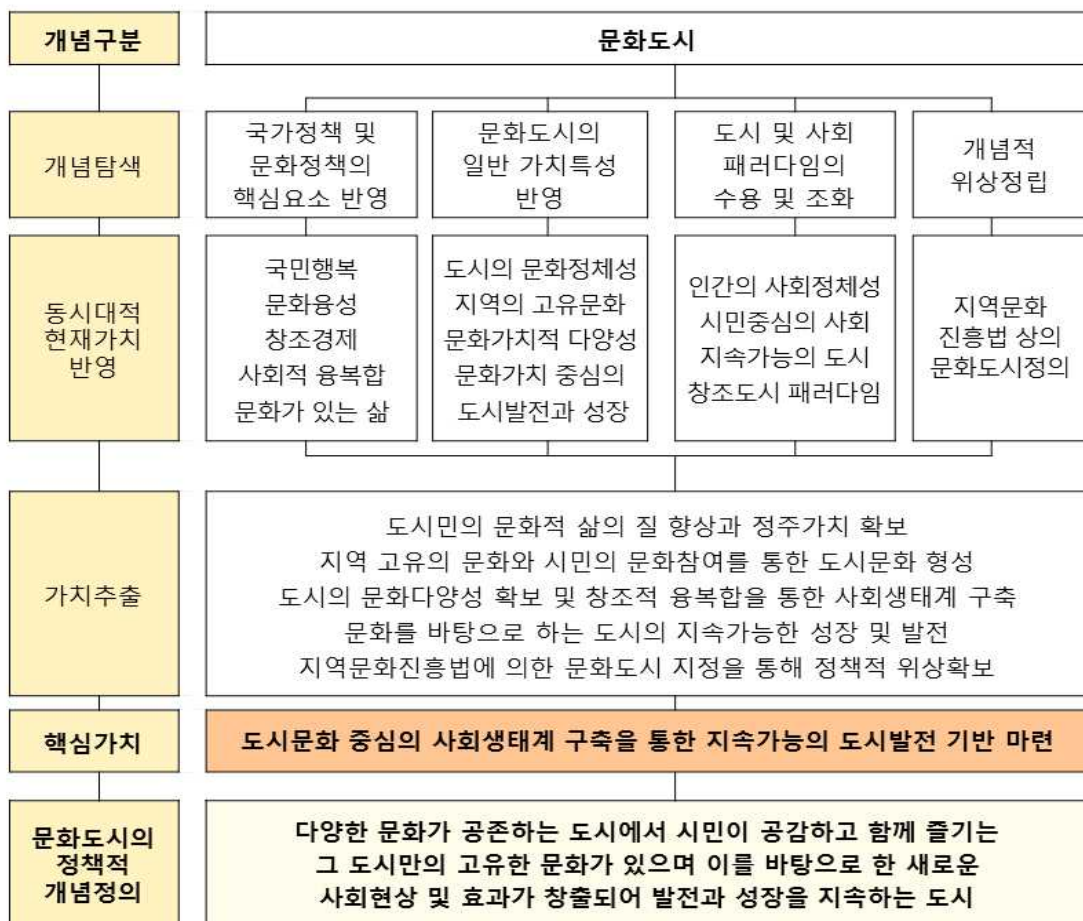
2. 정책 개념 및 방향

□ 문화도시의 정책적 개념정의

○ 문화도시란 “문화적인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

➔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

- 법적 개념정의 :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¹⁾
- 이론적 개념정의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²⁾



<문화도시의 정책적 개념정의>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2)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정책 비전 및 목표

-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성장 및 발전하는 미래형 문화도시를 통해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국가 발전체계 확립
- 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체계 확립과 문화국가 실현
- 지역 및 도시경쟁력 상승을 통한 국가발전구조 확립 및 기여

정책 비전	문화로 성장 및 발전하는 문화도시를 통해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국가 미래발전체계 마련
------------------	---

정책 목표	문화적 시민의식 각성을 통해 도시문화 정체성 발현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도시성장 및 발전기반 마련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	---

정책 추진 초점	문화적인 도시의 시민의식 발현과 거버넌스 구조화	①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문화를 알고 즐기면서 도시를 성장하게 하는 문화시민의 양성 ② 시민 / 전문가 / 공공이 하나되어 지역의 문화를 경영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하는 문화생태계 구축	③ 지역의 고유문화를 특화하여 도시가치이자 성장기제로 정착시키는 도시정체성발현 ④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도시가치 재창조
	문화를 통한 사회기능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	⑤ 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기능 활성화 ⑥ 문화적 가치와 생각이 도시기능·경제활동과 연결되어 가치효과를 유발하는 도시활성화

□ 정책 추진방향 및 실현전략

-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아젠다로서 문화도시정책을 채택하고 추진
 - 시대정신을 함축한 도시철학을 중심으로 지역을 새롭게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토탈정책 개념의 걸쳐플랜으로 문화도시정책 설계
 - 미래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 국가정책의제로서 문화도시정책을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문화도시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



- 첫째, 문화적 삶이 실현되는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정책
 - 도시민의 삶이 문화가 되고 그들의 문화가 도시의 문화가 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가치를 고양하는 정책으로 추진
 - 지역이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가능성을 찾아내고 지역만의 문화적 고유성을 확보 및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사업 전개

▶ 세부 실현전략 구성

- 도시의 문화적 가치 자산에 대한 탐색 및 파악 과정 도입
- 문화적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범위를 확장하는 다양한 문화의 총체적 도입
-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구조 도입
- 시민공모를 통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방식 도입
- 사업단계별 실행전략 구성 및 그에 부합하는 예산지원 방식 도입

-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가치적 고유특성을 발현하는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만의 고유특성과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각 도시에
서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방향으로 추진
 - 문화 소프트파워(휴먼/프로그램)에 기반하는 문화의 가치중심을 형성
하고 도시의 사회가치와 위상을 이끌어가는 리딩형 도시문화정책 추진

▶ 세부 실현전략 2

- 지역의 문화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적 프로세스에 가치를 두는 사업추진
-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 증진을 위한 예산 집중지원
- 문화전문인력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업예산 강화
- 도시의 문화적 경험과 여건에 맞춘 사업 추진방향 다변화
- 부처 정책사업 간 연계 및 복합추진방안 구성(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연접지역 권역사업 등)

- 셋째, 문화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발전의 미래원동력을 제공하는 정책
 - 지역의 문화가치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융복합을 시도하고 창의인재의
활동을 촉진하는 창의적 사회환경과 장소플랫폼 구축
 -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창조적 시도가 지역사회 활성화
에 기여하는 도시발전의 원천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추진

▶ 세부 실현전략 3

- 문화와 사회 각 분야 융복합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활성화
- 문화가치와 지역사회 전반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 발현
- 창의적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지역의 청년 문화활동가 육성 추진
-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성화 및 리노베이션을 통한 도시적 장소가치 재창조
- 생활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적극적 문화활동을 통한 공공적 사회문화 활성화

1. 문화도시 지정기준

□ 지정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1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 지정방식

- 문화도시 지정은 도시고유명칭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관련 법에 의한 분야를 구분하고 지역이 신청하는 고유분야를 담아 지정³⁾
 - 문화도시 지정은 도시 고유명을 기본으로 하여 “문화도시 ○○”으로 지정
 - 법에 의한 지정분야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관련 법의 분야를 근거로 분야 카테고리 구분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및 문화관련 개별법 근거)
 - 각 도시 지정 고유분야는 지역에서 신청하는 특성화분야를 고유분야로 개별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참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방법론

①	문화도시 브랜드로 도시명을 고유가치화	단 하나의 장소특정이 가능한 도시고유명칭 자체가 문화도시로서 브랜드를 형성하는 문화도시 브랜드 구성 기본방향 설정
②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기본분야 설정	문화도시 지정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바탕이 되는 분야를 대표분야로 하여 도시는 지정 기본분야 설정
③	법에 근거하여 국가 대표성-보편성 추구	도시지정 기본분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관련법에 근거하는 세부지정 분야 및 포괄범위를 구성하여 분야 지정
④	지역이 원하는 도시 고유성-다양성 반영	지역의 문화자치 추구 차원에서 실제 그 도시만이 원하는 다양한 도시브랜드를 인정하여 신청지자체의 중요브랜드를 분야에 명시

3) 문화도시 지정의 방법론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1 - 문화도시 지정방안 근거 및 세부내용” 참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방식 구성>

문화도시 지정방법론 구성(안)					
도시고유명 [도시고유성]	기본분야 및 법근거 세부분야 설정 [국가 대표성·보편성]		지역제안 가치반영 [지역 가치다양성]	문화도시 지정	
① 도시명	② 도시지정 기본분야	③ 분야개념 및 법근거 포괄범위	④ 지역가치 반영		
도시『○○』 (도시명) 지정도시명 (도시고유브랜드)	+	역사전통 분야 도시가 사회장소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한 정체성 으로서 문화의 원형적 가치를 지향 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특별법 역사/전통	+	=	문화도시 『○○(도시명)』 역사전통분야 □□문화중심도시
	+	문화예술 분야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천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지향 문화예술진흥법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 악/사진/건축/어문/출판/만화	+	=	문화도시 『○○(도시명)』 문화예술분야 □□문화중심도시
	+	문화산업 분야 도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쓰임과 활용을 만드는 문화의 지속가능가치를 지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공연/만화 ·애니메이션/대중문화예술/공예/문화 콘텐츠/(문화재/축제/디자인 등)	+	=	문화도시 『○○(도시명)』 문화산업분야 □□문화중심도시
	+	사회문화 분야 도시에서 삶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고 도시발전의 근본 바탕이 되는 문화의 가치다양성을 지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문화가치▶문화가치 다양성 추구)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생태문화/시민문화/인문/생활문화/여 가/문화교육/다문화 등	+	=	문화도시 『○○(도시명)』 사회문화분야 □□문화중심도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분야 지정(예시)

도시명		지정근거	법 근거 지정분야		지역가치 도시브랜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지정분야	분야포괄		도시고유성	법 지정분야	문화브랜드
전북 전주시	-	문화재보호법 건축자산법	- 역사전통	전통분야	+	전통 ▶	문화도시 『전주』	[역사전통분야 전통문화중심도시]
경북 경주시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법	- 역사전통	역사분야	+	신라역사 ▶	문화도시 『경주』	[역사전통분야 신라역사문화중심도시]
전북 남원시	-	문화다양성 보호증진법	- 문화예술	국악,문학 음악분야	+	소리문화 ▶	문화도시 『남원』	[문화예술분야 소리문화중심도시]
충남 천안시	-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 문화산업	문화산업 전반분야	+	독립문화 ▶	문화도시 『천안』	[문화산업분야 독립문화중심도시]
제주 서귀포시	-	문화예술 진흥법	- 사회문화	문화예술	+	생태문화 ▶	문화도시 『서귀포』	[사회문화분야 생태문화중심도시]

2. 문화도시 지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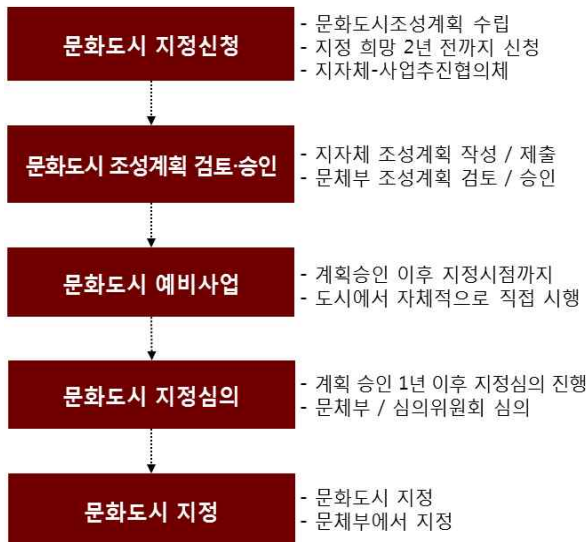
□ 지정절차 기본구성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문화도시 지정절차 구성 및 시행
 - 지역문화진흥법에 국가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명시 (법 제4장 15조 문화도시의 지정 및 17조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문화도시 지정절차는 도시의 문화환경 조성 및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의 문화적 발전과정과 프로세스를 중시하여 구성
 - “1) 문화도시 지정신청 ≫ 2)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 3) 예비사업 실행 ≫ 4) 문화도시 지정심의 ≫ 5) 문화도시 지정”으로 이어지는 법적 지정절차 구성(*문화도시 지정 전체과정은 기본 1.5년 ~ 2년 소요 예상)

<문화도시 지정절차 기본 구성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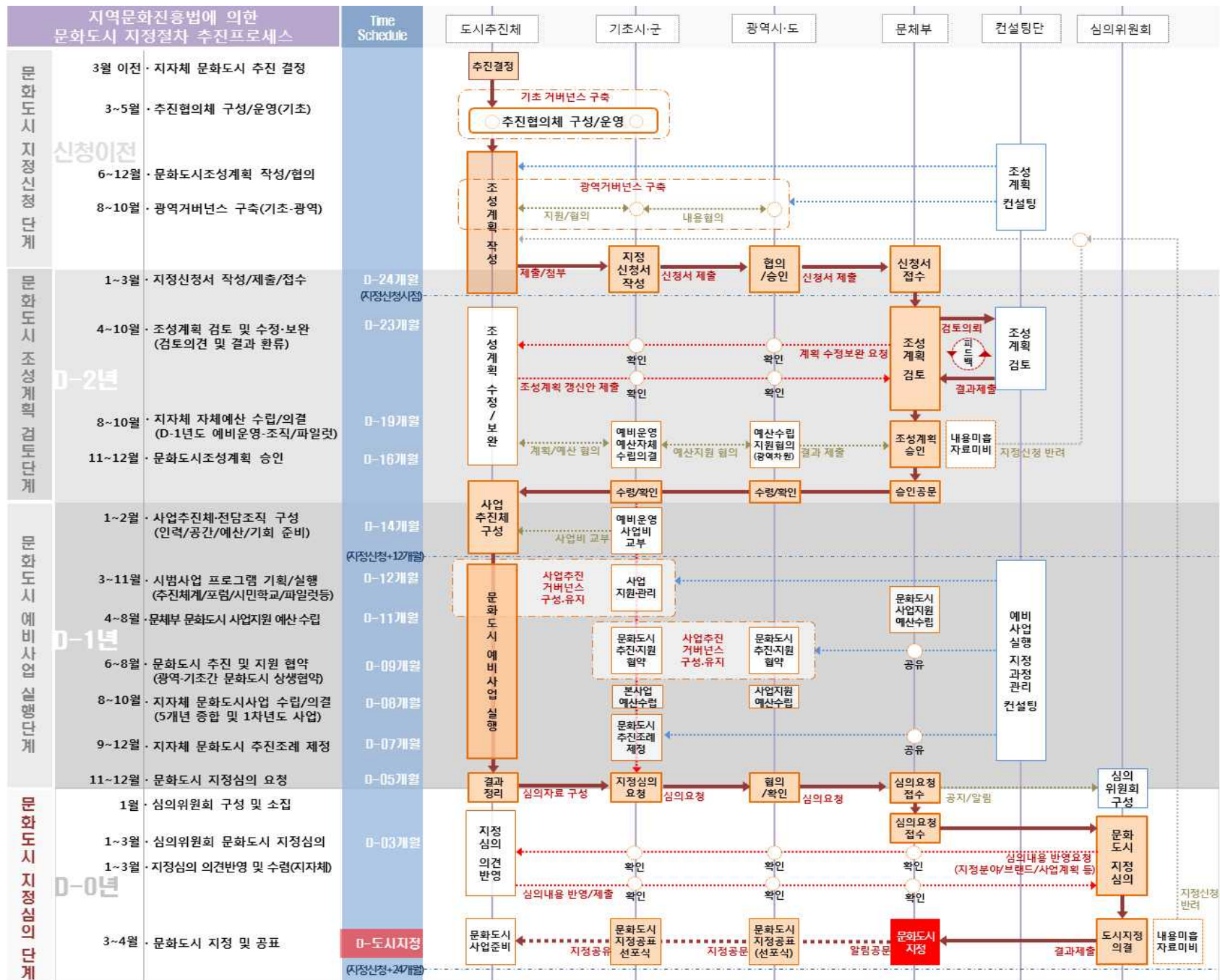
●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지역문화 진흥법 제4장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 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절차 추진 로드맵 기본(안) 구성
 -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신청부터 문화도시 지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문화도시 지정절차 추진 로드맵」으로 구성하고 이에 준하여 절차 관리



□ 지정절차 주요내용

1) 문화도시 지정신청 단계

(1) 조성계획 수립(지정신청 이전)

-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선행과정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문체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하여 각 도시 특성에 맞게 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지정신청 시 함께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포함내용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조성계획 포함사항을 기본으로 수립
 - 이와 함께 문체부에서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으로 별도 제시하는 사항
 -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사항⁴⁾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포함사항>

- 법 및 시행령에서 문화도시조성계획에 문화도시의 기본방향 / 지정분야 특성화계획 / 프로그램 개발 / 투자재원 / 도시 문화환경 및 자원현황 / 조직 및 추진체계 / 전문인력 운용 및 양성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법 제 15조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문화도시 지정신청(지정신청 시점)

- 문화도시 지정 희망 2년 전까지 도시관할 지자체가 문체부에 지정신청
 - 지정신청서는 문체부에서 통합 제공하는 양식을 기본으로 구성
 - 지정신청 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지정 관련 제반 자료 제출
- 지정신청서는 도시관할 지자체가 광역제출·협의를 거쳐 문체부에 신청·접수

4)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포함내용은 “별첨 2 - 문화도시 조성계획 구성목차 준거 가이드라인” 참고

2)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단계

(1) 조성계획 검토(지정신청 후 3개월~10개월 시점)

- 지정신청 접수 후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절차 진행
 -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컨설팅단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의뢰
 - 조성계획에 대한 문체부 정책검토와 컨설팅단의 전문검토 동시 진행
 - 조성계획 서면검토 - 조성계획 발표 - 현장실사 - 최종검토 절차 진행
- 조성계획 검토는 행정요건 및 계획내용검토 중심으로 [Pass or Fail] 진행⁵⁾
 - 1단계 : 도시지정 검토에 대한 행정요건 확인
 - 2단계 : 도시 준비상태 및 추진기반 확보 검토
 - 3단계 : 조성계획의 타당성 / 합리성 / 적정성 검토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및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을 위한 [Pass or Fail]제 운영>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 및 “문화도시 지정심의”는 기본적으로 문체부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공동으로 구성된 검토 및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Pass or Fail” 방식으로 심의과정 진행
 -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기준 및 지정심의 기준은 문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및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형식의 기준 구성
- 문체부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된 조성계획 검토 및 지정심의 기준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지정신청 도시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 및 지정심의 진행
 - 지정심의 기준에 명시된 각각의 기준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및 지정심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인정(Pass)
 - 조성계획 검토기준 및 지정심의 기준 불만족의 경우 반려(Fail)하고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등을 실시한 이후 다시 검토 및 심의절차를 진행하도록 구성(Feed back)

(2) 조성계획 검토결과 반영 및 수정·보완

- 지정신청 지자체는 조성계획 검토결과 반영 및 수정·보완
 - 검토과정에서 문체부는 검토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결과반영 요청
 - 지자체는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협의체와 함께 문화도시 조성계획 보완/제출
-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는 지정신청 접수+3~5개월, 최대 10개월까지 진행

5)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절차 세부내용은 “별첨 3 -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및 지정심의 주요내용”참고

- 문화도시 지정에 적합한 조성계획의 수립 시까지 검토 진행
- 지정신청+10개월 시점까지 조성계획 검토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문체부는 해당 지자체의 문화도시지정신청을 반려(지자체는 지정신청 절차부터 재진행)

(3) 조성계획 승인(지정신청 후 5개월~12개월 시점)

- 문체부에서 지정신청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토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문체부에서 조성계획 승인 결과를 지정신청 지자체에 통보(광역/기초)
- 지정신청 지자체는 승인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근거로 예비사업 추진준비
 - 승인 조성계획을 토대로 예비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절차 진행(예산마련 등)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절차 구성 주요내용>

검토 절차 구성	지정신청/검토의뢰	도시지자체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제출 ·조성계획 검토의뢰서 제출
	검토요건확인	문체부	·검토 진행요건 확인(행정/법정사항/제출자료)
	조성계획검토 - 계획검토 - 컨설팅 - 수정보완	검토단	·조성계획 내용검토 -타당성 / 합리성 / 적절성 등(검토주요내용 참고) -서면 / 발표 / 현장답사 / 토론 ·문화도시 자문 및 컨설팅
	최종판단	문체부	·검토결과 확인 / 승인여부 최종 판단
	조성계획승인	문체부	·조성계획의 정식 승인
검토 절차 시 제출 자료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의뢰서 ·문화도시조성계획(도시 자체승인안) 및 조성계획 수립 관련 증빙자료 ·도시 기본현황 자료(휴먼-소프트-하드포함)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의결과 행정문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용현황(예비 포함) ·예비사업 실행세부계획(향후 도시기정시까지) ·사업성과목표(안)[지정심의시점까지]		

검토 주요 내용	1단계 검토	행정요건 확인 [Pass or Fail]
	· 도시지자체 지정대상 행정요건 합치 ·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의결과 행정문서	
	▼	
	2단계 검토	도시 준비상태 및 추진기반 확보 [Pass or Fail]
	· 문화도시조성계획의 작성기준 준수 및 내용항목 만족여부(법정사항 및 가이드라인 제시사항 포함)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TF 또는 협의체 구성유무 · 예비사업 실행을 위한 도시지자체 예산투입 준비	
	▼	
	3단계 검토	계획의 타당성/합리성/적정성 [Pass or Fail]
	현황진단	· 도시환경 및 활용가능 문화자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진단이 이루어졌는가?
	도시가치	· 도시 본연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하는 비전 및 핵심가치가 제시되었는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 문화도시 정책의 지향가치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작성되었는가? · 문화도시를 위한 각 사업 및 프로젝트 계획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문화도시 추진과정 및 프로세스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정으로 설계되었는가? · 도시민의 문화참여 확대 및 문화접근성 보장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 및 활동 지원이 포함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 문화가치와 사회·경제 활동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 도시민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추진체계	· 도시민/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체계를 제시하고 있는가?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독립적 전문조직 구성계획이 구성되어 있는가? · 도시문화의 기획능력을 가진 총괄기획자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투입계획이 구성되어 있는가?
	정책지원 근거	· 지자체 정책계획에서 문화도시 추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지역문화계획/도시기본계획 등) · 광역-기초간 공동협력방안이 제시되고 있는가?(문화도시 정책협력 거버넌스)
	재원 투입계획	· 문화도시 추진에 적합한 재원계획이 구성되었는가?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투입이 적시/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지속 가능성	· 도시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가? · 도시의 중·장기적 발전구조에 대한 기여방향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3)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단계

(1) 예비사업 실행(지정신청 후 12개월~24개월 시점 / 조성계획승인 직후부터)

- 지정신청 지자체가 문화도시조성계획의 예비사업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 예비사업 실행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지정심의 전까지 추진(1년 이상)
 - 예비사업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하여 사업추진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조율, 주민참여 중심 시범운영 프로젝트 등 추진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문화도시형 사업추진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예비사업 대체 및 추진 가능)
- 예비사업 실행과 함께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약 구성(정기회의/예산지원계정마련 등)
 - 지정신청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문화도시 추진조례를 구성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예산 마련

(2) 예비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예비사업실행기간 동안 동시진행)

- 문체부에서는 문화도시 컨설팅단을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업에 대한 실행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진행
- 예비사업 컨설팅은 사업추진조직 설계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와 함께 문화도시 지정심의 준비과정을 컨설팅

4) 문화도시 지정심의단계

(1) 문화도시 지정심의 요청(지정신청 후 20개월 /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시점)

-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도시관할 지자체가 문체부에 지정심의 요청
 - 지정심의 요청서는 문체부에서 통합 제공하는 양식을 기본으로 구성
 - 지정심의 요청 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지정 관련 제반 자료 제출
 - 특히, 예비사업 실행결과 정리자료 필수 제출(사업추진 아카이브 형태)
- 지정심의 요청서는 도시관할 지자체가 광역제출·협의를 거쳐 문체부에 접수

(2) 문화도시 지정심의(지정신청 후 20개월~24개월 시점)

- 지정심의 요청 접수 후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심의절차 진행
 -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위한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소집
 -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예비사업 실행결과, 그 외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 진행
 - 조성계획 및 예비실행결과에 대한 서면검토 - 계획 및 현황발표 - 도시 현장실사 - 위원회 최종검토 및 지정심의 절차 진행
- 문체부가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위한 문화도시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체부에서 수립한 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 문화도시 지정심의 심의기준은 문체부에서 발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심의
-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행정요건 확인 및 예비사업 실행결과,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실현능력 및 가능성 판단 중심으로 [Pass or Fail] 진행⁶⁾
 - 1단계 : 도시지정 검토에 대한 행정요건 확인
 - 2단계 : 예비사업 실행결과 및 도시 준비상태 심의
 - 3단계 : 조성계획의 타당성 / 합리성 / 적정성 심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문화도시형 사업추진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검토 포함)
-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심의 최종회의를 통해 문화도시 지정의결
 - 문화도시 지정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 당해연도 문화도시 지정개소수 초과 시 지정에 대한 선정투표 제도 운영
 - 당해연도 지정신청 도시가 정책계획에서 수립한 도시지정 개소수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선정투표 진행[Vote for the Cultural city]
 -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심의과정 및 기준을 통과한 도시만을 대상으로 문화도시 지정에 가장 적합한 도시를 선정하는 투표 진행

6) 문화도시 지정심의 절차 세부내용은 “별첨 3 -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및 지정심의 주요내용”참고

- 문화도시 심의위원회는 지정심의 최종회의에서 도시선정 투표결과 최다 득표를 선정한 도시를 당해연도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의결

(3) 문화도시 지정(지정신청 후 5개월~12개월 시점)

- 문체부에서 심의위원회 지정심의 의결결과를 토대로 문화도시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문화도시 지정
 -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 결과를 지정신청 지자체에 통보(광역/기초)
- 지정신청 지자체는 문체부 지정결과를 근거로 문화도시 지정을 공표
 - 문화도시 지정을 토대로 본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절차 진행(예산마련 등)

<문화도시 지정심의 절차 구성 주요내용>

추진 절차	지정심의의뢰	도시지자체	·문화도시 지정심의의뢰서 제출
	▼		
	심의요건확인	문체부	·심의절차 진행요건 확인 (행정/계획/결과/제출자료)
	▼		
	지정심의 절차진행	심의 위원회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 -가치 / 가능성 / 실행능력 등 -서면 / 발표 / 현장답사 / 토론 ·문화도시 선정투표(필요시) ·사업지원 결정심의 진행(내용 / 규모 등)
	▼		
	최종판단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심의 최종회의 결과 확인 ·도시지정여부 최종 판단
	▼		
	문화도시지정	문체부	·문화도시 정식 지정
심의 절차 진행 중 제출 자료	·문화도시 지정심의 의뢰서 및 문화도시조성계획(문체부 승인+ 예비사업결과 반영안) ·예비사업 추진현황 및 이행결과 기록자료 ·도시 기본현황 자료(휴먼-소프트-하드 업데이트) ·문화도시사업의 문화영향평가 결과자료(도시지자체 자체시행-사전)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협약서 ·도시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구성 및 운용현황 ·문화도시 지정·활성화사업 실행세부계획(지정 5개년) ·사업성과목표(안)[[문화도시사업 3차년도 시점까지]		

1단계 검토

행정요건 확인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이후 1년 경과 여부
-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협약서 구성 유무



2단계 심의

도시 준비상태 및 추진기반 확보 [Pass or Fail]

- 예비사업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및 결과 기록 유무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체계 구성유무
- 도시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 설치 및 시행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투입 및 조달 준비



3단계 심의

문화도시 실현의 능력 및 가능성 [Vote]

도시 문화경영 및 생태계구축	· 예비사업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파악가능한 도시 차원의 문화기획 및 활동 전개 능력과 역량 ·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도시문화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능력 (인적 / 조직적 / 정책적 / 행정적 역량 포함) · 문화가치의 다양성 인정 및 활동가능성 보장 · 문화인재 양성 및 육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구축의 가능성 ·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청년 정주기반 형성 가능성
도시 문화력 및 브랜드 경영·관리	· 도시자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악가능한 도시 잠재력 ·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 촉진의 가능성 · 문화전문인력 및 창의집단이 활동과 정주할 수 있는 도시환경 구축의 가능성(문화기획자/예술인/기관 및 단체 등) · 도시에서의 새로운 문화활동 생성 및 발생의 가능성 · 도시가 보유한 가치자산의 창의적 개발 및 활용 능력 · 도시의 문화가치에 대한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능력 · 도시의 대표가치이자 철학으로서의 문화브랜드 생성 가능성
도시성장 및 발전구조	·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로서의 성장동력 생성 및 새로운 사회 이슈 창출(소셜임팩트)의 가능성 · 문화가치를 통한 새로운 지역생산구조 생성 및 산업·경제에의 기여 가능성(문화를 통한 사회생태계) · 도시문화 생성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장소거점 또는 문화혁신 지구 조성의 가능성 · 도시가 보유한 문화자산의 가치보존과 개발·활용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도시적 안목과 계획운영의 능력

Ⅲ 문화도시 사업

1. 사업지원 근거

□ 사업지원 근거

○ 문화도시 사업은 법 및 정책계획에 근거하여 문체부가 정책사업 지원

- 법적 지원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및 제17조 / 시행령 제15조
- 정책적 지원근거 : 지역문화진흥 2020 / 문체부 업무계획 등

<문화도시 사업지원 근거-법 및 정책 중심>

지원근거		사업지원 가능분야		지원주체-성격	
지역문화 진흥법	제2조 (정의)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특화(지역성/특성화) ·도시경영(효과성/창조성)		국가	법적 지원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필요 경비 3. 문화도시 조성 협력체계 구축 필요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추진 및 협력체계 ·도시브랜드 관리(홍보 및 마케팅)		국가	법적 지원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국가	정책적 지원
		지역문화 격차해소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가치발굴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각 지역 문화정책 및 계획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광역 시·도) ·지역문화진흥세부시행계획(기초 시·군·구) ·그 외 각 지역 문화정책 및 계획	·지역별 특성화사업 ·지역 고유정책사업		지자체 (광역/기초)	정책적 지원

2. 사업 기본구성

□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도시사업 「▶도시문화프로젝트(Cities Culture Plan)」
- 사업정의 :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
 - 사업대상 : 지역 기초시·군 및 광역자치구 중심(자치행정이 가능한 도시단위)
 - 사업규모 : 문화도시 지정 후 5년 간 기본 100억원 ~ 최대 200억원 규모
각 도시별 문화도시사업 시행(국비 50% : 지방비 50% 매칭)
 - 사업내용 :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사회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담는
장소로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추진(문화로 도시활성화)
- 사업핵심가치 : 문화를 통한 도시가치 제고 및 사회발전효과 창출
 -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주가치 확보
 - 문화도시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정립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문화적 사회생태계에 기반하는 지역사회 발전 및 파급효과 유발

□ 사업요건

- 사업대상 : 시민생활을 책임지는 문화 자치행정이 가능한 도시권역 단위
 - 도시행정단위 : 지역의 기초 시·군 및 광역 자치구 단위 도시
- 기본요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문화도시로 지정한 도시

□ 사업내용

- 도시문화 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을 생성하며
지속가능한 사회효과를 발현하는 지역 문화자치모델 구현 집중 지원
 -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사람·가치·기능·경제 등)를 연결하고 상생협력 효과를
내는 가치사슬 생태계 구축
 - 문화도시가 가진 고유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적 힘을 표출하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회경제적 효과 및 지역발전효과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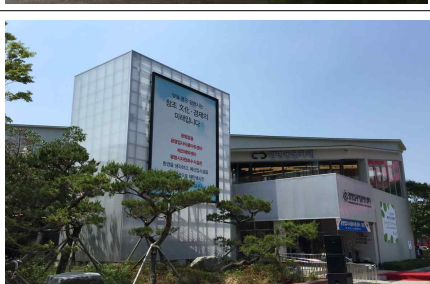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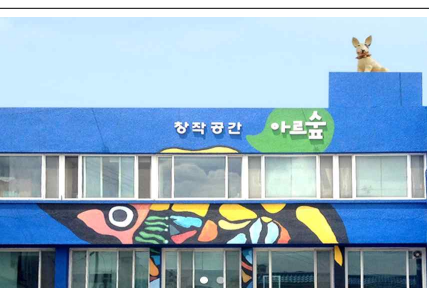
<문화도시 사업 기초모델 설계 및 주요내용>

문화도시 사업 기본모델 설계					
계획개념(Concept)		기획과정(process)		사업목표(Objective)	
도시문화 프로젝트 Cities Culture Plan	문화적 도시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도시문화 거버넌스 Cultural Governance	≫	문화경영체계 구축 Management System	문화 생태계
		인재양성 및 육성 Human Maker	≫	사회적 자본 형성 Social Capital	
	도시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을 생성하고	지역가치 재발견 Local Rediscovery	≫	지역자산 개발·축적 Cultural Asset	도시 브랜드
		문화기능 활성화 Cultural Activation	≫	문화환경 조성·실현 Cultural Environment	
	지속가능한 사회효과를 발현하는 사업	새로운 지역생산 New Local Product	≫	사회효과 발현 Social Impact	도시발전 구조/효과
		도시공간 재생 Urban Regeneration	≫	문화장소·혁신거점 조성 Cultural Place & Innovative Hib	

문화도시사업 추진내용

목표	사업분야	부문별 세부지원사업(안)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 정책경영체계 구축 - 도시 문화리더 출현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 문화도시 운영·관리(조직 및 거버넌스) ≫ · 문화도시 R&D(연구개발/평가·모니터링/사업기록) · 도시문화총괄기획자 제도 도입지원
	문화인재 양성/지원사업	· 문화청년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 ≫ ·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전문기획·매개)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 지역의 문화진흥 - 시민의 문화체감	도시가치 발굴·활용 사업	· 문화도시 포럼 ≫ · 도시문화 아카이브 · 문화도시 브랜딩 사업(개발/홍보/마케팅)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 도시문화학교 운영사업(참여·시작) · 시민 문화클럽 지원사업(문화공동체 육성·지원) ≫ · 문화기획지원사업(창작/향유/교육/복지 등) · 문화도시 페스티벌(도시축제)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 문화일거리 생성/지속 - 사회경제적 효과 파급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	· 사회적 문화실험 사업(창의성 인큐베이팅) · 문화창업 성장·육성·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셜벤처 등) ·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사업 (문화도시 투어 / 도시교류)
	문화적 장소재생 사업	≫ · 문화장소 플랫폼 조성사업(창의문화지구) ·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지역 정체성 획득 - 고유성 강화 및 특성화	지역제안형 도시문화사업	≫ · 지정도시 특성화 제안사업 ≫ (지역 스스로 문화사업 자율 제안)

<문화도시 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사례>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 도시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사업경영체계 구축 <사례> 천안 문화특화지역 사무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및 모델 개발 대학 및 연구소, 기관간 상호협력 증	 정부 제도·정책 제언 도시재생 정책 고도화 지원 시스템 및 체계 개선 정책 연계 모델 개발  지자체 맞춤형 사업 기법 제언 근린재생형 기법 고도화 중심시가지 기법 개발 경제기반형 기법 개발  민간 주체별 역량 강화기법 제언 주민 공공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문화인재 양성/지원사업] 지역에서 정주 활동할 수 있는 문화청년 및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사례> 문화우물 지역 생활권 문화공동체 및 주민문화 인력 양성·지원으로 사회기반 구축	 
[문화도시 브랜딩 사례] 문화적 가치로 도시브랜드를 생성하고 도시이미지 향상 및 사회적 효과 유발 <사례> 전주 전통문화도시 원도심의 한옥마을을 문화브랜드로 활용하여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극대화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고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연결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 <사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남부시장의 방치된 2층에서 청년들의 창업으로 재생 및 상권활성화 유도	 
[문화장소 재생사업] 도시 방치된 유휴공간을 문화장소로 재생하고 새로운 문화활동의 장소이자 청년혁신지구 등으로 활성화 <사례>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산업유휴공간을 재생한 문화예술센터로 조성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소통거점이자 관광명소화	 
[지역제안형 도시문화사업] 지역이 도시에 필요한 문화사업 및 활동을 직접 프로젝트화하여 제안하고 실행하는 지역창의혁신형 제안사업 <사례> 춘천 일당백 프로젝트 청년들의 실험적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 결과로서 지역의 청년문화플랫폼인 아르쥬 조성	 

3. 사업유형 및 추진체계

□ 사업유형

- 지정분야별 사업유형 구분[①] : 문화경영/도시특화 공통지원(75억원)[③]
- 인구규모별 사업유형 구분[②] : 효과파급/하드웨어 선별지원(25~125억원)[③]
 - 도시일반형 : 인구 50만 미만 도시(공통 75억원 +선별 25~45억원)
 - 권역거점형 : 인구 50만 이상~100만 미만 도시(공통 75억원 +선별 45~75억원)
 - 대도시형 : 인구 100만 이상 도시(공통 75억원 +선별 75~12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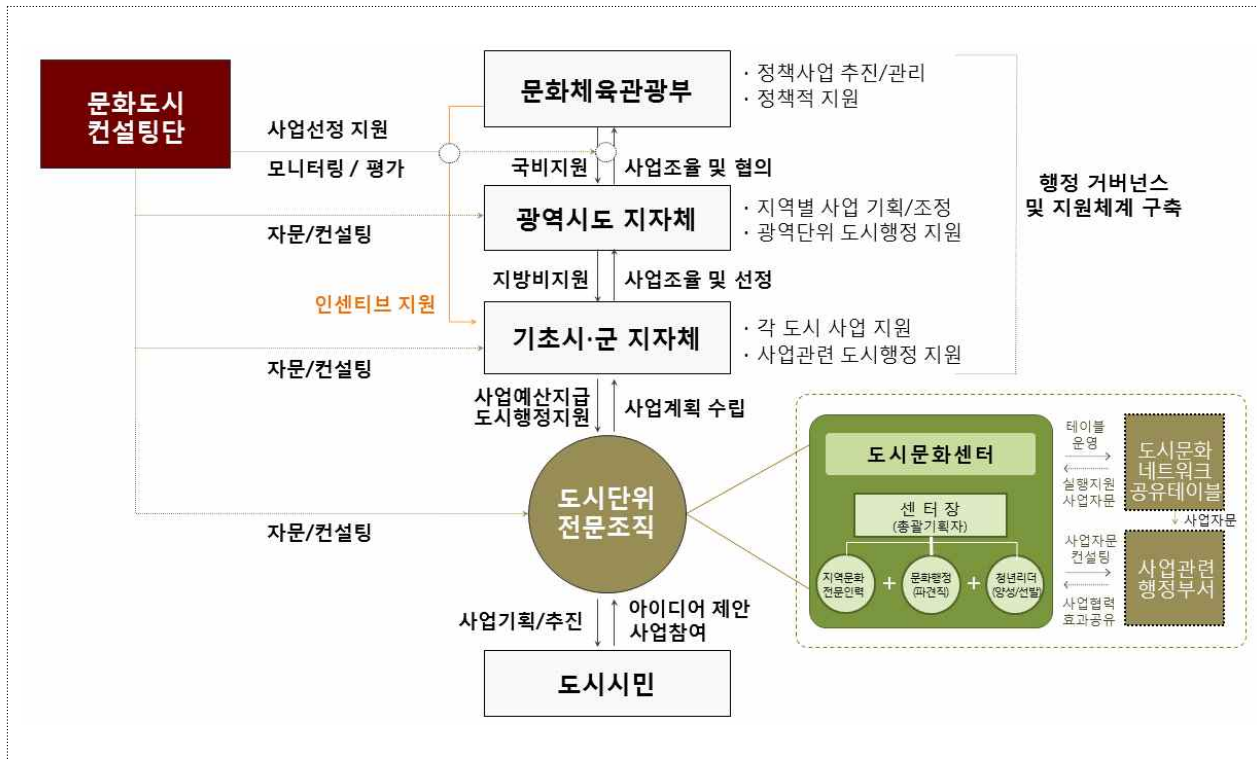
<사업유형 구분 및 지원규모 결정방법>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①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②효과적으로 활용하여 ③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구분기준	①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	② 효과적 활용	③ 문화 창조력 강화
	지역특성 및 다양성 반영	지역 실행여건 및 실효성 반영	지역문화진흥정책
사업유형 구분	지정분야별 구분	도시규모별 유형구분	지원 방법론 구성
	도시 지정분야별 특성화유형 다양성 인정 (역사/전통/예술/산업/자산/○○ 등)	- 도시일반형 : 인구 50만 미만 - 권역거점형 : 인구 50만 이상 인구 100만 미만 - 대도시형 : 인구 100만 이상	- 공통지원 : 문화경영-특화전략 - 선별지원 : 효과파급-하드웨어

지정분야별 구분		사업지원			사업유형 구분	
유형공통	지정분야	분야공통지원	사업	규모선별지원	도시규모 유형	유형기준
도시문화경영 문화생태계 사회발전구조	역사전통	75억원 (기본사업비)	▶ 문화도시사업	25~45억원 (선별사업비)	도시일반형	인구 50만 미만
	문화예술			45~75억원 (선별사업비)	권역거점형	인구 50만 이상 인구 100만 미만
	문화산업			75~125억원 (선별사업비)	대도시형	인구 100만 이상 광역도시
	문화자산					
	○○ (도시지정 분야)					

사업유형 구분 (예시)					
도시명	지정분야 (도시브랜드)	공통지원	도시규모 유형	선별지원	사업유형 구분
남원시	문화예술-음악 (소리문화도시)	75억원	기초시/약 8만명	25~45억원	음악분야 도시일반형 100억~120억원
천안시	문화산업-독립 (독립문화도시)	75억원	기초시/약 70만명	45~75억원	독립분야 권역거점형 125억~150억원
수원시	문화자산-시민문화 (생활문화도시)	75억원	기초시/약 122만명	75~125억원	시민문화분야 대도시형 150억~200억원

□ 사업추진체계



주체구분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사업추진 주체	도시단위 추진조직	도시문화센터 (문화경영전문)	- 도시문화경영 전문조직 운영 / 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 - 각 프로젝트 기획·추진 / 사업예산 수령 및 결과정산 - 도시 문화관광 및 사회연계구조에서의 커넥터 역할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경우 도시협의체를 지역 전문조직으로 구성·운영가능
		도시문화 공유데이터베이스	- 도시 내 시민리더 및 문화리더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의이블 - 문화도시진에 대한 전체 정보 공유 및 상호토론과 추진 지원
사업실행 참여주체	사업실행 및 참여자	도시시민 (시민리더 중심)	- 사업아이디어 제안 / 사업 참여(프로그램/행사/교육 등) - 공모 및 제안사업의 프로젝트 실행자로서 참여 - 각 분야 및 사업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행동주체로 참여
행정지원 주체	중앙정부 지역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중앙차원) - 정책사업 성과관리 / 사업예산 지원(국비 / 인센티브 지원) - 사업추진 및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광역시·도 지자체	- 각 지역 및 권역별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 - 사업예산 지원(광역 차원의 시·도비 및 행정지원) - 통합 협력지원체계 참여 및 유지
		해당도시 지자체	- 사업신청 및 예산지원과 그에 대한 관리 실시 - 도시행정적 지원 및 관리(보이지 않는 후원자) - 사업추진협의체와 거버넌스 참여 및 유지
사업지원 주체	전문 지원조직	문화도시 컨설팅단	- 사업추진 자문 및 컨설팅 -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업무 전개 - 정책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업예산 및 회계구조

□ 사업예산

- 도시사업예산 : 기본 100억원 ~ 최대 200억원 이내(국고+지방비 총사업비 기준)
 - 사업예산구성 : 도시지정분야별 사업비(공통) + 도시규모별 사업비(선별) 조합 구성
 - (기본지원) 도시지정분야별 사업비 : 75억원 (공통)
 - 각 문화도시에 연간 15억원 규모 기본지원 사업비 공통지원
 - 문화도시에 사업추진기간 5년 간 지속적으로 고정지원(5년간 총 75억원)
 - 문화도시의 경영체계 및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사업비로 투입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문화인재 양성·지원/도시가치 발굴활용/지역문화 활성화 중심)
 - (선별지원) 추진도시규모별 사업비 : 25 ~ 125억원 (차등)
 - 도시규모별 유형구분에 따라 각 도시 실행여건 및 실효성을 판단하여 지원
(일반형 25~45억원 / 권역거점형 45~75억원 / 대도시형 75~125억원)
 - 사업 2차년도 완료시점에서 추진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지원수준 최종 결정(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선별지원 사업비는 사업 3~5차년도에 단계별로 지원하고 문화도시 특화 및 지속가능기반 조성, 효과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비로 투입
(→도시가치 발굴활용/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 문화적 장소재생 - 하드웨어 중심)
 - 예산조달방식 :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지특회계 경제계정 비목 지정사업]
 - 지특회계방식으로 추진하고 경제발전계정에 편성(국가-광역 정책의제로 관리)
 - 경제발전계정 내 세부사업명을 지정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예산 비목 지정)
 - 국가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매칭하여 지원/추진(국비 50% : 지방비 50%)
- ※ 예산회계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문체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 및 결정 필요

*** 참고 - 문화도시사업의 회계방식 적용에 대해 선행된 이론적 고찰 의견**

- 조기형의 「포괄보조금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발전방향(2012)」 및 송미령 권인혜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향(2011)」 등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회계적용에 있어 사무성격, 편익범위, 지방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통합이나 이관(광역계정 배치) 검토필요 제시

<문화도시 사업 예산구성>

사업비 산출방식	▶ 사업비	=	도시지정 분야별 사업비(기본지원)		+	도시규모별 사업비(선별지원)		=	문화도시 유형별 총사업비 가이드라인
									(기본+선별)
구분	사업명		유형	사업비		유형	사업비		사업비 가이드라인
사업비 가이드라인 구성	▶ 문화도시 사업		○○분야 - 역사전통 - 문화예술 - 문화산업 - 문화자산	75억원	+	도시 일반형	인구 50만 미만	25~45억원	= 기본 100 억원 ~최대 120 억원
						권역 거점형	인구 50만 이상 인구 100만 미만	45~75억원	= 기본 120 억원 ~최대 150 억원
						대도시형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	75~125억원	= 기본 150 억원 ~최대 200 억원
▼			▼			▼		▼	
예산회계 방식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 신규 비목 지정사업 / 사업비 매칭 5 : 5								

○ 예산투입구조 : 문화도시 지정분야 기본사업비와 도시규모 선별사업비를 사업연차 및 단계별로 투입·조합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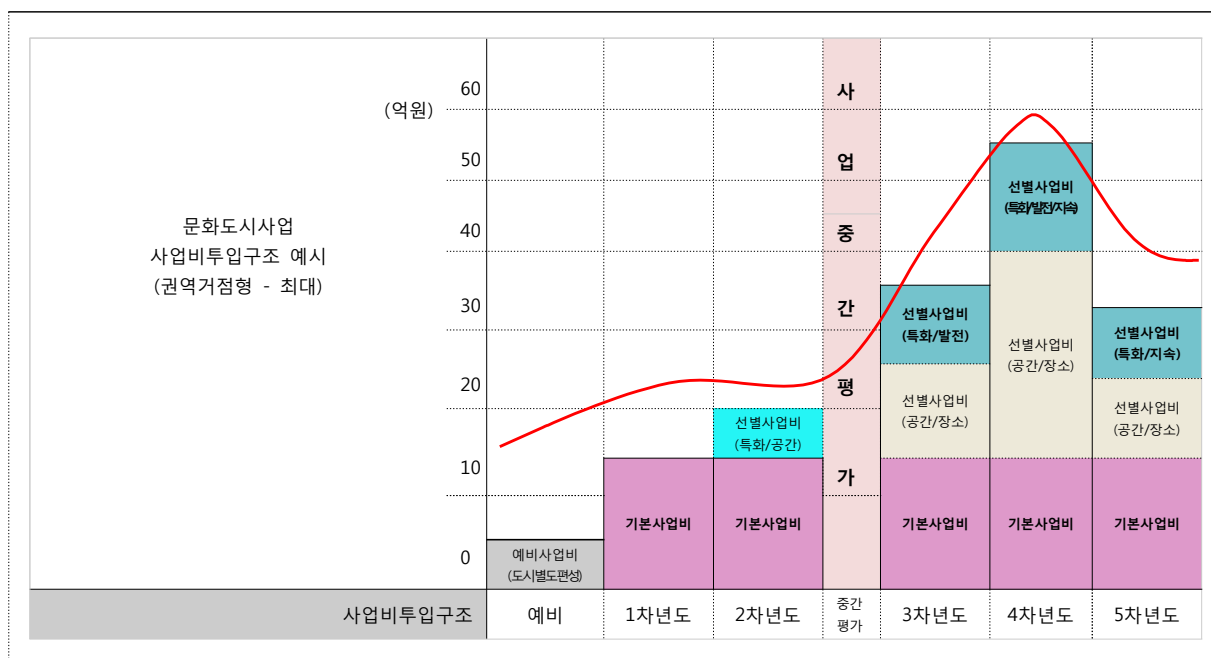
- 기본사업비 1~5년 고정 투입 : 도시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경영체계 구축
(➡문화적 시민의식 각성 / 문화기반 강화 / 도시문화생태계 구축)
- 선별사업비 3~5년 집중 투입 : 도시특성에 따른 전략투자 및 사업효과 창출
(➡도시브랜드 생성 / 문화장소 구축 / 사회경제 연결·파급효과 생성)

<문화도시 사업 연차별 예산투입 기본구조(안)>

사업연차	예산투입 기본구조
예비사업실행단계	· 도시 자체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실행하면서 사업추진기반 마련(국비매칭 없음)
사업 1차년도	· 기본사업비 중심 사업예산 투입, 사업추진환경 조성 및 최초 도입과정 진행
사업 2차년도	· 선별사업비의 일부를 투입(소규모)하여 시범운영(파일럿)을 추진 · 완료 시점에서 사업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선별사업비 수준 결정
사업 3~4차년도	· 기본사업비를 베이스로 하는 선별사업비의 집중투입 및 전략사업 추진 · 도시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및 문화도시 장소거점 및 도시허브 구축
사업 5차년도	· 집중투자 사업비 투입완료로 사업추진효과 발현 및 사회적 파급효과 창출 · 중앙지원형 사업예산 투입 종료
사업 종료 이후	· 도시 지자체 중심의 자체적인 투입구조로 전환(*지역 준비 필요)

- 문화도시 지정 이전 지정심의단계에서 각 신청 도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이후 지정심의 시까지 본 사업 추진 이전의 예비사업 실행 및 추진(시범운영 - 1년간 2~5억원 투입 예상)
- 지정예비단계 사업비는 문화도시사업비와는 별도로 각 도시에서 자체 편성하여 진행

<문화도시 사업 예산투입 구조 설계 예시(안)>



구분		사업비		사업연차별 예산투입구조(예시안)								
				예비단계	1차년도	2차년도	중 간 평 가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예비단계사업비(지정심의시)		(2~5) (도시자체투입)		(2~5)	-	-			-	-	-	
도시지정 분야 기본사업비		75		-	15	15			15	15	15	
추진도시 규모별 선별사업비	도시 일반형	기본	25	(2)	-	1			4	15	5	
		최대	45	(2)	-	3			10	22	10	
	사업비종합		100~125		(2)	15		16~18		20~30	30~35	20~25
	권역 거점형	기본	45	(2)	-	5			10	20	10	
		최대	75	(2)	-	7			18	35	15	
	사업비종합		120~150		(2)	15		20~22		25~33	40~50	25~35
	대도시형	기본	75	(5)	-	10		15	30	20		
		최대	125	(5)	-	10		25	60	30		
	사업비종합		150~200		(5)	15	25		30~40	55~75	35~55	

IV 문화도시 조성정책 추진계획

1. 정책목표 설정

□ 문화도시 정책목표

<문화도시 정책목표에 따른 단계별 정책목표 및 달성지표 구성>

문화도시 정책목표	문화적 시민의식 각성을 통해 도시문화 정체성 발현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도시성장 및 발전기반 마련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1단계 정책목표 (2017~18)	2단계 정책목표 (2018~21)	3단계 정책목표 (2021~25)
	문화도시 가치 지역인식 지역의 문화경영기반 구축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문화도시 브랜드 생성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문화진흥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정책달성지표	정책달성지표	정책달성지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최초 지정	각 지역 및 권역별 대표 문화도시 만들기	각 권역 및 테마별 문화도시 상생벨트 구축

- [1단계 정책목표] 문화도시의 가치인식 및 지역의 도시문화 경영기반 구축
 - 내용 : 지역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지역가치 생성구조 인식
지역의 도시적 문화계획에 대한 가치인식으로 문화자치 기반 구축
 - 목표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도시기반체계로서 문화도시 최초 지정
- [2단계 정책목표]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을 통한 도시 가치브랜드 생성
 - 내용 :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효과생성 및 파급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가치 발현을 통해 지역·도시 경쟁력 강화
 - 목표 : 지역 및 권역별로 문화적 도시브랜드를 가진 대표 문화도시 만들기
- [3단계 정책목표]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문화진흥 및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 내용 : 문화도시 연결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상생발전을 위한 체계 마련
각 권역 및 테마별로 문화가치를 통해 연결되는 도시네트워크체계 구축
 - 목표 : 지역문화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네트워크 연합 구축

2. 정책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성

□ 정책추진

- 2017년 ~ 2025년(9개년)까지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 집중 추진
 - 정책추진 각 단계별 정책방향 및 목표에 따라 추진
(➡ 1단계 도시 최초지정기 ~ 3단계 도시네트워크 구축기 구성)

<문화도시 정책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구분		추진연차		정책방향	정책목표	
		연도	기간		도시지정	달성목표
0 단계	문화도시 지정준비기	2014년~2016년	3개년	문화도시 지정준비	-	예비사업 추진활성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1 단계	문화도시 최초 지정기	2017년~2018년	2개년	문화도시 최초지정 및 지정체계 마련	5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최초 지정
2 단계	문화도시 발굴·육성기	2018년~2021년	4개년	도시가치 브랜드 생성 도시활성화효과 발현	24	권역 대표문화도시 선정 및 효과 발현
3 단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기	2021년~2026년	6개년	문화도시광역벨트 구축 지역 상생발전효과	55	권역별 문화도시 네트워킹 벨트 구축

1) 문화도시 최초지정기(1단계)

- 추진시기 : 2017~2018년 (2개년)
- 정책초점 : 문화도시 지정체계 구조화 및 최초 지정
- 추진내용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효과 인식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체계 정식 마련 및 절차 진행
 - 문화도시 지정신청('17년 하반기) 및 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최초지정('18년 중)
(지정신청 ➡ 계획검토·승인 ➡ 예비사업 실행 ➡ 지정심의 ➡ 도시지정 순차 진행)
- 추진목표 : 5개 문화도시 지정 ▶(기존)거점 4개소 및 (신규)선도 1개소
 - 지역거점 문화도시 계획 조율 및 지정(전주/경주/공주/부여)
 - 문화특화지역사업[예비사업] 추진 선도지자체 지정(남원)

2) 문화도시 발굴-육성기

- 추진시기 : 2018~2021년 (4개년)
- 정책초점 : 문화도시 지역브랜드 생성 및 대표문화도시 지정
- 추진내용 : 도시 지정을 통한 각 지역 문화도시 추진 활성화
 - 각 도시별 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유의 도시문화성장구조 발현
 - 지역에서 광역별 대표적인 도시문화 브랜드 생성 및 구축
- 추진목표 : 19개 도시 지정 ▶광역권역마다 1~2개 문화도시 지정
 - 도시지정과 함께 각 권역별 대표문화도시를 발굴하면서 집중 지원
 - 문화특화지역사업(예비단계) 추진 도시부터 단계별로 선별 지정

<대표문화도시 지정>

- 대표문화도시란 각 권역별로 지정된 문화도시 중 도시문화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를 의미
- 대표문화도시 지정은 문화도시 지정 후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 중 활성화시기(3~5년차)에 있는 도시 대상 지정
- 대표문화도시는 각 권역마다 2년 주기로 미리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문화도시의 날 축제 / 문화도시네트워킹 교류행사 /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 등 집중 지원 및 홍보하여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

3)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기

- 추진시기 : 2021~2026년 (5개년)
- 정책초점 : 지역간 상생구도의 지역문화 네트워킹 체계 구축
- 추진내용 : 각 지역 및 권역별 문화도시 광역 연계벨트 구축
 -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문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 문화도시 상호간 문화 프로젝트 교류 및 합동 행사 등 진행
 - 문화도시벨트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여행 지역자원화
- 추진목표 : 31개 도시 지정 ▶권역별 3개소 수준의 문화도시 지정
 - 권역별 문화도시벨트, 문화테마별 광역연계벨트, 도시여행벨트 등 생성
 - 도시문화 연계루트(문화협력/여행/관광 등) 생성이 가능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유발 및 파급 기대

□ 정책 및 사업추진 로드맵 구성

- 문화도시 정책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 로드맵 종합>

사업명	사업내용	단위사업규모		전체 사업추진규모		
		기간	사업비	기간	총사업수	총사업비
문화도시 사업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	5년간	기본 100억원 ~최대 200억원	2017 ~2025 (10개년)	55개 도시	약 4,154억원 -국 비: 2,567억원 -지방비: 2,567억원

구분	연도	2014~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차	D-3~1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정 책 추 진	정책방향	문화도시 준비기			문화도시 최초 지정기			문화도시 발굴-육성기			문화도시 효과 및 네트워크 구축기			사업 완료
		도시지정 준비 예비사업추진			문화도시 최초지정			도시가치 브랜드 생성 도시활성화 효과 발현			권역별-테마별 광역벨트화 지역 상생발전효과			효과 지속
	문화도시 지정	단위: 도시지정 개소수												
	연차 지정	-	-	-		5	6	6	7	7	6	6	6	6
	지정 누적	-	-	-		5	11	17	24	31	37	43	49	55
	정책목표 달성계획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 추진활성화			1단계 정책목표 달성 문화도시 최초지정			2단계 정책목표 달성 권역별 대표문화도시 선정			3단계 정책목표 달성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 업 추 진 / 재 정 투 입	문화도시사업	단위: 사업추진 개소수												
	연차 추진	-	-	-	-	-	5	6	6	7	7	6	6	6
	추진 누적	-	-	-	-	-	5	11	17	24	31	37	43	49
	연차사업비 (억원)	-	-	-	-	-	75.0	215.0	390.0	645.0	902.0	955.0	972.0	980.0
	국 비(50%)	-	-	-	-	-	37.5	107.5	195.0	322.5	451.0	477.5	486.0	490.0
	지방비(50%)	-	-	-	-	-	37.5	107.5	195.0	322.5	451.0	477.5	486.0	490.0
	투자규모 종합	총 투자규모 : 49개사업 / 5,134억원 (국비 2,567억원 / 지방비 2,567억원) - 1단계(~18년) : 0개사업 / 0원 (도시지정절차 진행) - 2단계('21년) : 17개사업 / 680억원 (국비 340억원 / 지방비 340억원) - 3단계(~26년) : 49개사업 / 5,134억원 (국비 2,567억원 / 지방비 2,567억원)												

*문화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투입규모 계산은 각 도시별 사업비의 평균금액인 150억원을 단위사업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Ⅵ 정책 및 사업 추진활성화 지원계획

1. 정책사업 연계 및 복합 추진

□ 문화도시-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연계 및 복합 추진

1) 사업연계필요성

- '14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당시 문화도시형은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의 기초사업이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설계·추진함
- 현재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형)은 활성화 시점에 도달했으나 사업한계 상 5년차 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우려 발생
-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예비사업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조건 상 예비지원이 어려운 상황
- 문체부의 도시단위 문화프로젝트로서 동일선상에 있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형)과 문화도시 사업을 연계·복합하여 사업한계 보완 필요
- 문체부 구조상 중장기 도시형 문화정책이 없었던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문화효과 지속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필요

2) 사업연계구조

- 연계내용 : 문화특화지역사업과 문화도시 사업 복합·연계 추진
- 연계목적 : 문체부의 도시단위 정책사업의 상호간 시너지 효과 창출
- 연계내용 : 문화도시 지정 이전과 후의 예비사업 및 본사업으로 연결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형)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추진
 - 도시의 내적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도시 가치를 발현하고 문화도시 조성의 기반구조를 정립하는 사업
 - 문화도시 사업 : 문화도시 법적 지정에 따른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 문화도시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 및 사회효과를 유발하는 사업

- 연계방법 : 문화도시 추진단계별 연결을 통한 도시발전맥락 지속의 방법
 - 문화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예비사업 - 문화도시 지정-활성화사업으로 연속 및 발전시켜 진행하는 단계별 순차연계구조로 설계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중간평가지점과 문화도시 지정심의과정을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연결구조 마련
 -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조직 및 사업구조 등을 도시발전맥락 상에서 연속 및 발전시키는 복합형 사업으로 추진

<문화도시사업-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연계 및 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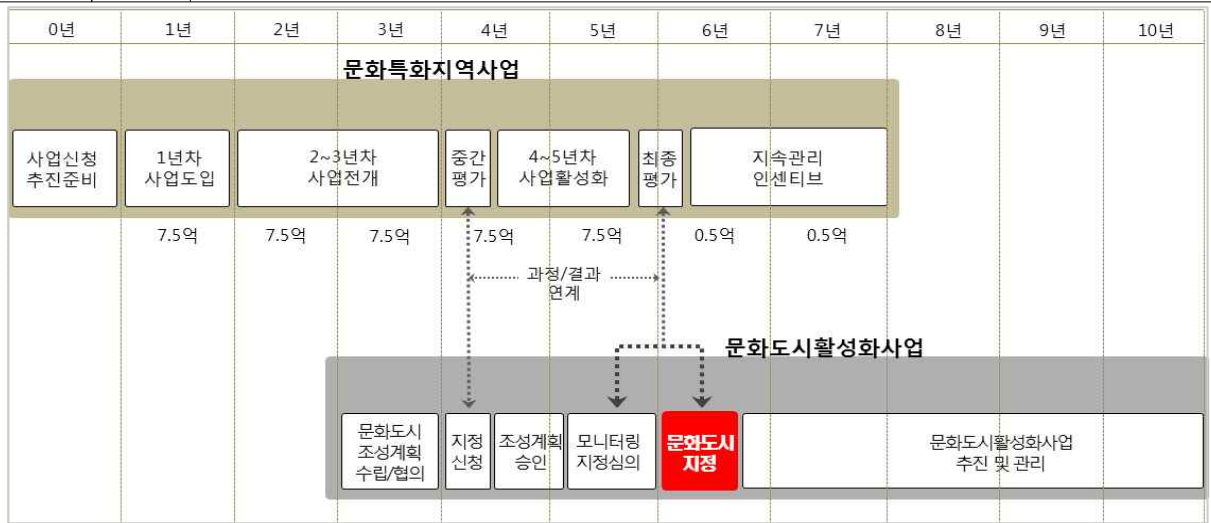
1단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추진	· 지역에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형)을 신청하여 2~3년간 추진 (▶문화시민의식 함양 / 문화활성화사업 추진 / 도시문화생태계 기반 확보)
2단계	문화도시 지정과정연계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3차년도 시점에서 문화도시 지정 준비 및 신청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 도시의 문화도시 지정신청 시 추진과정 상의 가점 및 우선권 부여(▶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 / 지정심의 / 도시지정 최종투표 등)
3단계	사업구조 연결 및 이관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실행 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인정하고 문화도시 지정심의 과정에서 결과 제출 및 반영 · 도시 지정 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문화도시사업으로 연결·이관
4단계	사업구조 발전추진	· 법적 지정에 따른 문화도시사업 추진 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조직 및 사업구조 등을 도시발전맥락 상에서 연속 및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추진

3)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사업개별효과 종합 및 중장기 극대화 / 추진단계 상호보완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종료에 따른 문화효과 지속가능성 연계 확보
 - 문화도시 사업에서 지정신청 이전단계 예비사업 추진으로 도시 기반 및 문화환경을 사전 조성하고 추진역량 강화 가능
 - 문체부의 도시단위 문화프로젝트로서 중장기(최대 10년의 지속성 가능)적 지역 발전 및 도시효과 창출 가능구조의 국가 핵심문화정책으로 추진 가능

<문화도시 사업-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연계·복합방안>

구분		문화특화지역사업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사업
사업 일반	사업 내용	문화역량 강화로 문화도시 가치를 발현하고 문화도시 기반구조 정립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기반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활성화 및 사회효과 유발
	규모	5년간 최대 37.5억원		5년간 100~200억원
사업 연계 구조 제안	연계 방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단계 지원사업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문화도시 지정 이전 예비시점		문화도시 지정 이후 활성화시점
	기대 효과	사업 종료에 따른 문화효과 지속가능성 향상 및 확보		예비사업 추진으로 도시문화 기반 및 환경 사전조성과 추진역량 강화
		문체부의 도시단위 문화프로젝트로서 중장기(최대 10년의 지속성 가능)적 지역 발전 및 도시효과 창출 가능구조의 국가 핵심문화정책으로 추진 가능		



4) 재정투입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사업으로 문화특화 지역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을 동시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지원 및 관리

<각 사업별 추진목표 및 재정 투입규모>

사업명	사업내용	단위사업규모		전체 사업추진규모		
		기간	사업비	기간	총사업수	총사업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단계 지원사업	5년간	최대 39.5억원	2014 ~2026 (13개년)	55개 도시	약 2,172.5억원 -국 비: 869.0억원 -지방비: 1,303.5억원
문화도시 사업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	5년간	기본 100억원 ~최대 200억원	2017 ~2025 (10개년)	49개 도시	약 5,134.0억원 -국 비: 2,567억원 -지방비: 2,567억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 사업 연계·복합 추진 로드맵>

구분	연도	2014~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차	D-3~1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정 책 추 진	정책방향	문화도시 준비기 도시지정 준비 예비사업추진			문화도시 최초 지정기 문화도시 최초지정		문화도시 발굴-육성기 도시가치 브랜드 생성 도시활성화 효과 발현			문화도시 효과 및 네트워크 구축기 권역별-테마별 광역벨트화 지역 상생발전효과				사업 완료 효과 지속
	문화도시 지정	단위: 도시지정 개소수												
	연차 지정	-	-	-		5	6	6	7	7	6	6	6	6
	지정 누적	-	-	-		5	11	17	24	31	37	43	49	55
	정책목표 달성계획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 추진활성화			▲ 1단계 정책목표 달성 문화도시 최초지정		▲ 2단계 정책목표 달성 권역별 대표문화도시 선정			3단계 정책목표 달성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
문 화 특 화 지 역 조 성 사 업 추 진	사업추진	단위: 사업추진 개소수												
	연차 추진	1	6	11	8	7	6	6	5	5	0	0	0	0
	추진 누적	1	7	18	26	33	39	45	50	55	55	55	55	55
	연차사업비 (억원)	7.5	52.5	150	196.0	254.5	302.0	304.0	255.0	230.5	177.0	131.0	85.0	42.5
	국 비(40%)	3.0	21.0	54.0	78.4	101.8	120.8	121.6	102	92.2	70.8	52.4	34.0	17.0
	지방비(60%)	4.5	31.5	81.0	117.6	152.7	181.2	182.4	153	138.3	106.2	78.6	51.0	25.5
	투자규모 소계	총 투자규모 : 55개사업 / 2,172.5억원 (국비 869억원 / 지방비 1,303.5억원)												
문 화 도 시 사 업 추 진	사업추진	단위: 사업추진 개소수												
	연차 추진	-	-	-	-	-	5	6	6	7	7	6	6	6
	추진 누적	-	-	-	-	-	5	11	17	24	31	37	43	49
	연차사업비 (억원)	-	-	-	-	-	75.0	215.0	390.0	645.0	902.0	955.0	972.0	980.0
	국 비(50%)	-	-	-	-	-	37.5	107.5	195.0	322.5	451.0	477.5	486.0	490.0
	지방비(50%)	-	-	-	-	-	37.5	107.5	195.0	322.5	451.0	477.5	486.0	490.0
	투자규모 소계	총 투자규모 : 49개사업 / 5,134.0억원 (국비 2,567억원 / 지방비 2,567억원)												
재 정 투 자 종 합	연차사업비 (억원)	7.5	52.5	150	196.0	254.5	377.0	519.0	645.0	875.5	1079.0	1086.0	1057.0	1022.5
	국 비(50%)	3.0	21.0	54.0	78.4	101.8	158.3	229.1	297.0	414.7	521.8	529.9	520.0	507.0
	지방비(50%)	4.5	31.5	81.0	117.6	152.7	218.7	289.9	348.0	460.8	557.2	556.1	537.0	515.5
	투자규모 종합	총 투자규모 : 각 55, 49개 사업 / 7,306.5억원 (국비 3,436억원 / 지방비 3,870.5억원)												

□ 문화도시(문체부) - 도시재생(국토부) 사업 연계 및 복합 추진

- '14년 12월, 문화도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및 복합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M.O.U.를 체결한 상태로 각 지역 연계 및 복합 추진 적극 권장
- 그러나 천안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정책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생효과 발현이 어려운 상태
- 특히, 문체부의 문화도시조성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상호간 연계 및 복합 추진을 통해 정책사업 시너지효과 발현 가능
 - 현재 문화도시 지정 준비 중이거나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에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천안/남원/군산/제주 등)
 - 문화가치 및 소프트파워 중심의 문화도시사업과 도시인프라 및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연계 및 복합되는 경우 상호 시너지 및 정책적 상생구조 활성화 가능
- 향후 부처 간 연계협력 M.O.U.을 바탕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사업 연계 및 복합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계속적으로 지원
 - 문화의 가치가 도시민의 생각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도시인프라가 삶의 환경을 재정비하면서 문화적 삶이 있는 도시 정주환경 확보 가능

□ 문체부 및 그 외 부처와의 사업연계 추진방안 검토 및 모색

- 현재 문체부 및 타부처에서 도시단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문체부의 관광도시사업 /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 테마여행 10선 등
 - 타부처의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농림부) /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중기청) 등
- 문화도시 사업과 문체부의 타부처 사업 및 타부처 관련사업의 복합추진을 통해 사업추진 활성화 및 가치 제고(국토부/안행부/농림부 등 가능)
- 문체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내 협력과 부처간 협의 및 M.O.U.를 체결하면서 정책사업 복합추진에 대해 적극 지원

□ 사업연계 정책지원 인센티브 제도 운영

- 법 지정 문화도시(또는 지정예비단계 도시)가 문체부에서 추진 및 운영하는 지역문화 정책사업에 지원 및 신청하는 경우 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 검토 실시
-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정책사업에 지원 및 신청하는 경우 문화도시를 최우선 검토 진행
- 검토결과 해당도시의 문화도시 추진에 연계될 수 있거나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
- 해당 문화도시에서는 문화도시조성사업과 함께 우선 지원된 지역문화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도시추진 활성화 유도

<천안시의 문화-도시-재생 라운드테이블 운영 사례>

- 천안시는 현재 (구)천안역 주변 원도심 일대에서 문화특화지역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동시 추진 중
- 사업연계 및 복합을 위해 '15년 7월~12월까지 문화-도시-재생 라운드테이블 운영
- 그 결과로 파일럿프로젝트인 “아트큐브페스타”를 개발, '15년 12월 원도심복합축제 추진
- 도시재생사업에서 빌딩공간을 제공하고 문화도시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소 기반 복합문화축제 성공적 개최하고 마무리
- '17년에도 천안시는 문화도시사무국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으로 문화-도시-재생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면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각각의 연계·복합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



2. 도시브랜드 및 가치효용 극대화

□ 권역별 대표문화도시 선정 및 지원

- 문화도시 사업 추진 중 그 성과 및 효과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도시(사업 3~5년차 추진도시 중심)를 “권역별 「대표문화도시」”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
 - 권역별 대표문화도시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를 대상으로 각 권역에서 2년마다 지정
 - “권역별 「대표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해당 권역의 문화도시벨트 구축에 있어 벨트 거점도시로 지정하고 지원
 - 각 권역에서는 대표문화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및 지역) 간 문화교류 프로젝트 추진 및 집중 지원(인적교류/프로그램교류/연구·포럼 등)
- 문체부의 정책활성화 지원에 따른 권역별 대표문화도시 선정 시 사업비 지원 인센티브 제공 검토(국비 10억원 매칭 수준으로 별도 사업비 예상)

□ 문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문화여행벨트” 구성

-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각 권역별 문화도시(2~4개소 예상)를 문화도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문화여행벨트 구성 및 운영
 - 벨트 내의 대표문화도시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 문화도시 여행루트를 개발하고 상호 연계하는 문화여행 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
 - 문화도시가 보유한 지역자산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 브랜드상품을 기반으로 각각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문화콘텐츠를 향유-체험-구매할 수 있는 문화도시 여행콘텐츠 개발 및 실도입 활성화
- “도시문화여행벨트”는 문화도시간 네트워킹 체계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 12조(협력활동 지원)에 근거하여 문체부에서 직접 지원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협력활동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도시문화여행벨트”를 통해 권역별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문화 가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사회적 파급효과 극대화
- 권역벨트가 활성화 시 광역간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 분야 및 주제별 투어가 가능한 문화도시 광역연계 투어벨트 구축도 가능

□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및 지원

- 현재 문체부 국제협력과에서 동아시아 도시 간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추진 중
 - 한·중·일 3개국에서 매년 도시를 선정하고 도시 간 국제교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문화가치 교류를 진행하는 사업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14년 광주, '15년 청주, '16년 제주, '17년 대구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일본 및 중국의 도시와 함께 사업 추진
-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현재의 문화도시 사업에 연계하여 문화도시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가치 확보 지원
 - 각 권역별로 선정되는 대표문화도시 중 사업이 가장 활발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 해당 문화도시는 당해연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를 홍보 및 마케팅하고 국제적 도시교류를 위한 기반체계 마련
-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은 문화도시의 지평을 국외까지 넓히는 문화도시 가치 및 브랜드 확장형 연계사업으로 발전 및 구조화하여 지속 추진

<‘15년 청주시의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사례>

· 청주시는 ‘15년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와 함께 도시 상호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문화교류 프로젝트 및 포럼 등 진행



한국 청주 소리창조예화공연



중국 칭다오 공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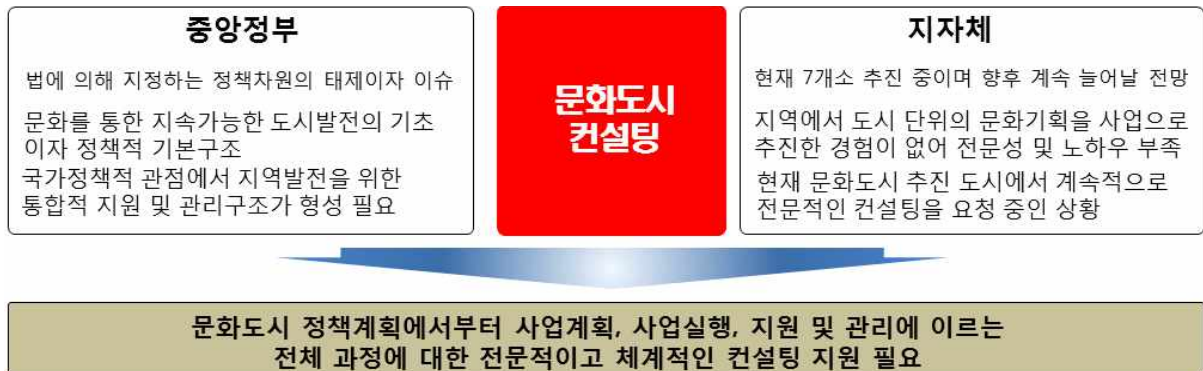


일본 니가타 공연단

3. 문화도시 전문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문화도시 컨설팅단 운영

1) 문화도시 컨설팅 필요성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전문컨설팅 필요성>

○ 중앙정부 정책 차원의 필요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은 법적 지정으로 지역문화 정책에 있어 매우 큰 태제이자 이슈임
- 특히 문체부의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에서 실현되는 모든 결과는 각 지역의 도시에서 모이게 되며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집약되는 구조
- 지역발전의 방향에 있어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초이자 기본구조가 바로 문화도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심의 및 지정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정심의 및 지정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단 필요
- 종합적으로 문화도시는 단순히 지역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지원 및 관리구조 형성 필요

○ 지자체 사업실행 차원의 필요

- '15년 기준 최초 도시인 남원을 포함 7개 도시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인 문화특화지역사업을 추진 중이며 '16년에는 11개소의 도시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 향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준비 및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
-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 도시에서 도시 단위의 문화기획을 사업으로 추진해 본 경험이 거의 없으며 특히 지역문화정책사업을 1~2년 단기 사업이 아닌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본 경험 또한 없음
(이전의 지역거점 문화도시사업이 유일한 정도)
- 현재 문화특화지역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에서도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추진 방법 및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오해와 실행오류가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2)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구조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목적

-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도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정책계획에서부터 사업 계획 - 실행-지원 및 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실시
- 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을 위해 구성하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및 지정심의과정에 대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컨설팅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컨설팅단 운영방식

-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사업형태로 위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하에 문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운영

3) 컨설팅단 기능 및 역할

○ 중앙정부 지원

- 중앙정부인 문체부의 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지원, 관리에 대한 자문
- 정책사업의 추진 / 모니터링 / 평가 과정에 대한 전문분야 참여 및 지원
-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과 구성해야 하는 정책거버넌스 매개 및 유지

○ 지자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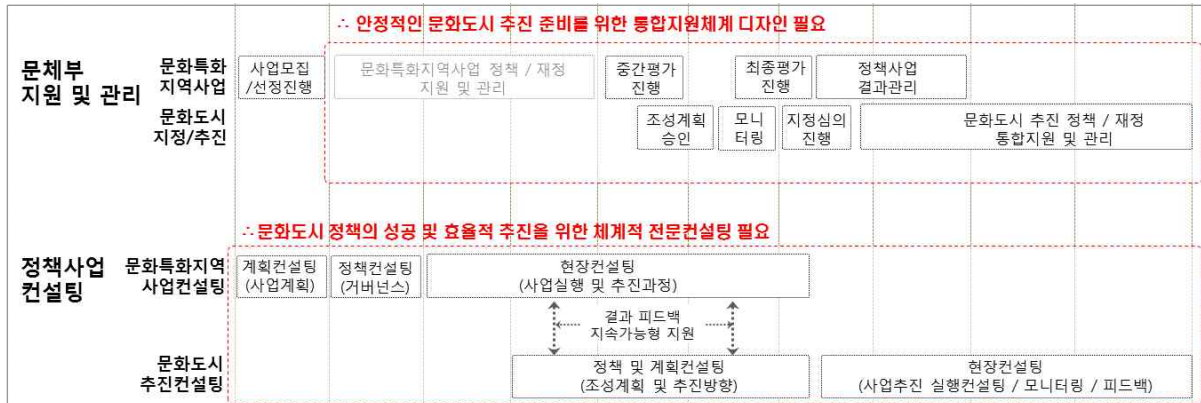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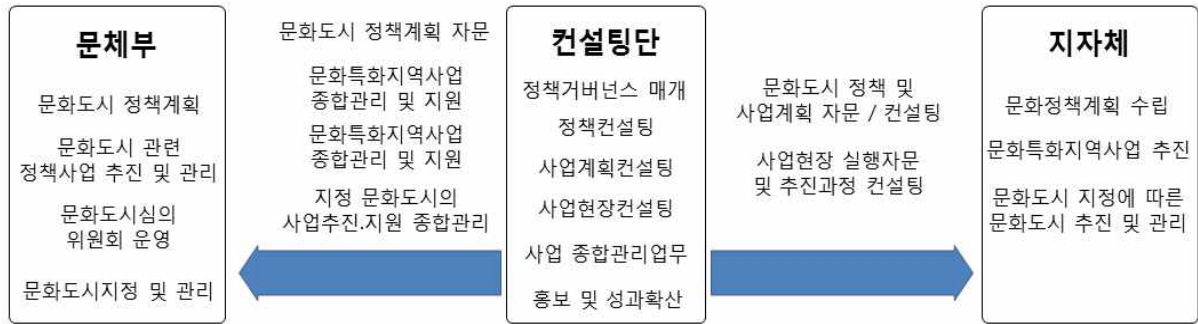
- 지자체의 문화도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 및 컨설팅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문화특화지역사업 추진 시 사업현장에 대한 실행자문 및 추진과정 컨설팅
-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시 각 도시 사업현장에 대한 실행자문 및 추진과정 컨설팅

4) 컨설팅단 업무

- 문화도시 컨설팅단은 문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매개 업무를 기본으로 정책계획 및 정책사업 컨설팅 및 추진관리 업무와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업무를 동시에 수행함

<문화도시 컨설팅단 업무>

업무구분	업무 주요내용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단계 종합컨설팅 (문화도시지정예비사업)	- 문화특화지역 사업공모 및 선정에 대한 전문가 지원 - 각 도시 사업계획 및 추진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매개 - 각 도시 사업추진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사업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진행 및 지원
문화도시 지정 및 관리 단계 종합 컨설팅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 지정 문화도시 추진 및 지속관리 과정에 대한 전문분야별 현장 컨설팅 - 각 지역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지속 관리 및 모니터링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정심의 과정에서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문화도시 지정심의 과정에서의 지정신청 도시에 대한 전문분야별 현장 컨설팅 - 문화도시 지정 최종심의 진행 및 지원
문화도시 추진 정책계획에 대한 수립 및 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의 종합관리 및 대응(중앙정부 차원) - 광역단위 문화도시 추진 및 관리에 대한 정책자문 및 컨설팅 지원
문화도시 관련 정책사업 추진 및 관리	- 문화도시 포럼 및 워크숍 운영 - 문화도시 사업설명 및 추진주체 교육 - 문화도시 사업 홍보 및 성과확산에 대한 업무 실행 - 문화도시 사업정보 및 현황, 추진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정책 아카이브 구축)



<문화도시 컨설팅단 기능 및 관계 구조>

5) 운영계획 제언

○ 2017년 컨설팅단 시범운영

-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지원방안 종합발표와 함께 진행과정 지원을 위해 문화도시 컨설팅단을 시범적으로 운영

(*문체부에서는 컨설팅단의 컨설턴트를 위촉 및 임명하여 공식적인 위상을 정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현장대응형 R&D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문화도시 지정이 예상되는 주요도시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지원 실시

○ 2018년 컨설팅단 정식운영

- '18년 문체부 예산계획 시 문화도시 컨설팅단 정식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구성 및 배정하고 준비
- '17년 컨설팅단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에서 2017년 문화도시 컨설팅단을 정식 발족 및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도시 R&D 및 컨설팅사업”으로 위탁받아 정식 운영

□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이 법(제15조)에 의한 정식의 국가적 도시지정 제도가 되었으며 문화적인 도시브랜드를 통해 문화국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이자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정책으로 부상
- 2017년 현재 지역거점문화도시사업(5개소) 및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형-20개소)이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대상은 전국 2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문화도시 지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간 5~7개의 도시 지정신청 예상)
- 문화도시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 조성계획 승인 - 예비사업 실행 - 지정심의 및 도시지정에 이르기까지 약 1~2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간 동안 전문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문화도시 지정 및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서 필요 요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 필요
- 문화도시 정책계획 및 사업추진, 지정절차 진행 등 전반 과정에 대해 컨설팅단을 총괄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성 높은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필요

2) 센터 설치

- 설치목적 : 문화도시 지정 및 정책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전문지원과 총괄관리
- 운영방식 : 문체부 산하기관 위탁(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운영예산 : 연 3억 원 규모(인건비 및 운영비)
- 기능임무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과정 전문관리
문체부의 문화도시 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각 지역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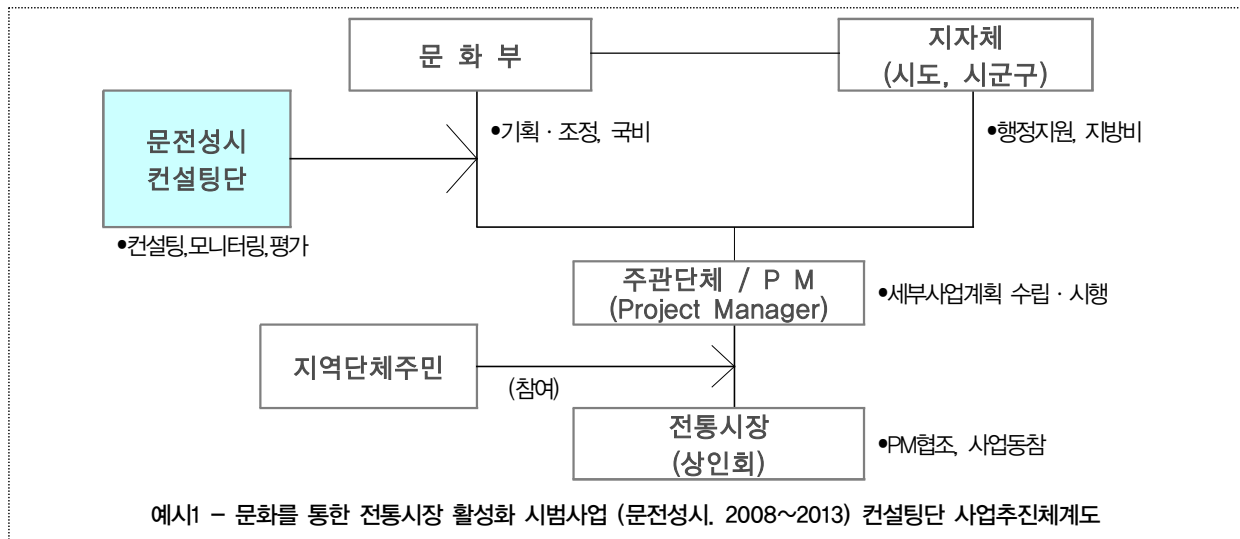
3) 센터 기능 및 역할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과정 전문관리
 - 지정절차 및 매뉴얼 관리 /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과정 지원 / 각 도시 예비사업 실행 모니터링 / 지정심의 진행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 문체부의 문화도시 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컨설팅단과 연계)
 - 문화도시 정책자문 / 관련 전문연구 및 조사 / 정책성과 분석·평가·환류 등
- 각 지역 문화도시 지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컨설팅
 - 문화도시조성계획 컨설팅 / 예비사업 실행컨설팅 / 각 권역별 사업 컨설팅 / 정책사업 관련 자료(정보) 통합관리 등
-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 총괄 지원
 - 정책주체간 거버넌스 연결기능(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 거버넌스 매개)
 - 문화도시 지정·활성화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홍보와 성과확산
 -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및 관리 / 정책 및 사업관계자 교육 등

[정책 및 사업추진 전문 지원조직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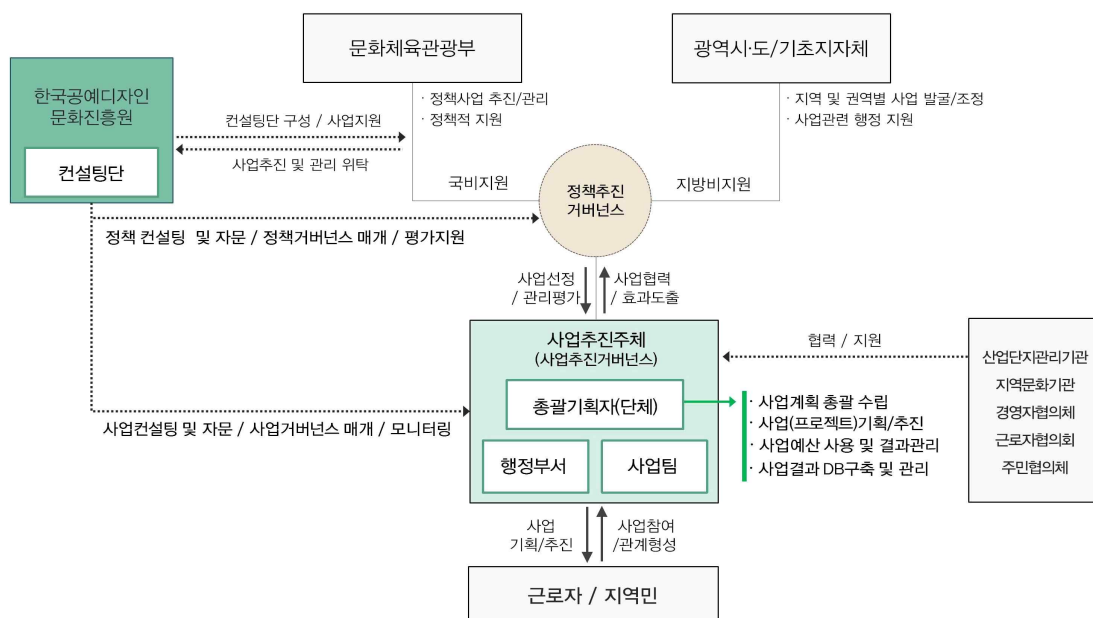
□ 문전성시 컨설팅단

- 사업명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약칭: 문전성시사업)
- 사업규모 : 2008년~2013년(종료) / 총 27개 전통시장 선정·지원 / 국비 약 118억원 지원
- 위탁운영기관 : 시장과문화컨설팅단(민간전담기관으로 비영리임의단체 선정)
- 위탁운영예산 : 3억 3천만원(2011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원조직구성 : 문전성시 컨설팅단
 - 운영목적 :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대상선정, 사업시행, 추진상황점검, 성과평가 등 사업전반에 걸친 사업추진과정 지원과 정책효과 극대화
전문가 그룹(문전성시컨설팅단)의 집단지성에 의한 전문지식과 경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정책역량 제고
 - 기능임무 : 문전성시 정책자문, 전문연구·조사, 사업성과 분석·평가 / 사업기본계획 조언 / 사업대상 심사 / 시장별 실행계획 및 실행방안 컨설팅 / 추진상황 모니터링 / 예비전문인력 양성 / 사업관계자 교육/ 정책홍보 및 성과확산 지원 등



□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 컨설팅단

- 사업명 :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약칭: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
- 사업규모 : 2014년~2017년(계속) / 대상사업 현재 20개소 / 국비 약 240억원 지원
- 위탁운영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문화부 산하 지정)
- 위탁운영예산 : 3억 5천만원(2014기준,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원조직구성 : 예술로공간재창조사업 컨설팅단
 - 운영목적 : 사업계획,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지자체와 지역주민,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협업을 위한 사업추진 거버넌스 구축으로 체계적 사업 추진
 - 기능임무 : 사업실행 컨설팅 및 지원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 중앙정부,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정책자문 및 사업자문 지원 / 정책토론회, 포럼, 세미나, 워크숍지원 및 성과확산 지원 등



#별첨 1 - 문화도시 지정방안 근거 및 세부내용

기본분야 설정개념	지정근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도시고유성	법에 의한 지정분야 [국가 대표성-보편성]		지역문화브랜드 [지역성-다양성]	
			도시명	지정분야	분야 포괄범위	문화브랜드 추구	
도시가 사회장소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한 정체성으로서 문화의 원형적 가치를 지향	문화재보호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 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 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도시 『○○』 - 역사전통분야 □□문화중심도시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 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 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 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도시명)	+	역사전통 분야	역사분야 전통분야	+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천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지향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정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하 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문화도시 『○○』 - 문화예술분야 □□문화중심도시 -				
			도시『○○』 (도시명)	+	문화예술 분야	문학분야 미술분야 음악분야 무용분야 연극분야 영화분야 연예분야 국악분야 사진분야 건축분야 어문분야 출판분야 만화분야	+

기본분야 설정개념	지정근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도시고유성	법에 의한 지정분야 [국가 대표성-보편성]		지역문화브랜드 [지역성-다양성]
		도시명	지정분야	분야 포괄범위	문화브랜드 추구
도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쓰임과 활용을 만드는 문화의 지속가능가치를 지향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 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 텐츠·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 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 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 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 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 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건본시 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 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문화도시 『○○』 - 문화산업분야 □□문화중심도시 - 영상산업분야 (영화,영상,비디오 포괄) 음악산업분야 게임산업분야 출판산업분야(인쇄포괄) 문화재산업 만화·애니메이션산업분야 광고산업분야 공연산업분야 대중문화예술산업분야 공예산업분야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에듀테인먼트/모바일/캐릭 터/디지털/사용자제작/멀티 미디어 포괄) 축제분야 디자인분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분야 지정(예시)

도시명		지정근거		법에 의한 지정분야 [국가 대표성-보편성]		지역문화브랜드 [지역성-다양성]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지정분야	분야 포괄범위			도시브랜드 추구	도시고유성	법 지정분야
광주광역시	-	지역문화 진흥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 문화예술	예술분야 전반	+	아시아문화	▶	문화도시 『광주』	[문화예술분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북 전주시	-	지역문화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건축자산법	▶ 역사전통	전통분야	+	전통	▶	문화도시 『전주』	[역사전통분야 전통문화중심도시]
경북 경주시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법	▶ 역사전통	역사분야	+	신라역사	▶	문화도시 『경주』	[역사전통분야 신라역사문화중심도시]
충남 공주시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법	▶ 역사전통	역사분야	+	백제역사	▶	문화도시 『공주』	[역사전통분야 백제역사문화중심도시]
충남 부여군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법	▶ 역사전통	역사분야	+	백제역사	▶	문화도시 『부여』	[역사전통분야 백제역사문화중심도시]
부산광역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	영상산업분야	+	영상	▶	문화도시 『부산』	[문화산업분야 영상문화중심도시]
대구광역시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	음악/무용/연극분야	+	공연	▶	문화도시 『대구』	[문화예술분야 공연문화중심도시]
전북 남원시	-	지역문화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	국악/문학/음악분야	+	소리문화	▶	문화도시 『남원』	[문화예술분야 소리문화중심도시]
전북 익산시	-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법	▶ 역사전통	역사분야	+	백제왕도	▶	문화도시 『익산』	[역사전통분야 백제왕도문화중심도시]
충남 천안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	만화산업/디자인분야	+	독립문화	▶	문화도시 『천안』	[문화산업분야 독립문화중심도시]
경기 부천시	-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자산	생활문화	+	생활문화	▶	문화도시 『부천』	[사회문화분야 생활문화중심도시]
경기 성남시	-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 사회문화	시민문화	+	시민문화	▶	문화도시 『성남』	[사회문화분야 시민문화중심도시]
경북 구미시	-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산업단지특별법	▶ 사회문화	산업문화	+	디자인문화	▶	문화도시 『구미』	[사회문화분야 산업문화중심도시]
제주 서귀포시	-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 사회문화	생태문화	+	생태문화	▶	문화도시 『서귀포』	[사회문화분야 생태문화중심도시]

별첨 2 - 문화도시조성계획 구성목차 준거 가이드라인

○○ 도시 문화도시조성계획

[계획개요]

- 문화도시조성계획의 개념 정의
 - 문화도시조성계획 정의 및 근거
 - 활용방향 및 방법
- 도시환경 진단 및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 도시 일반환경 및 기본현황 파악결과 종합
(문화환경 / 인문사회환경 / 산업경제환경 / 자연생태환경 등)
 - 도시 문화자원 조사결과(휴먼웨어-소프트웨어-하드웨어)
 - 정책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 검토(중앙-광역-기초단위 정책)
 -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도시민 의견수렴 결과

[문화도시 비전 및 조성방향 설정]

- 도시비전
 - 문화도시 비전 및 핵심가치
- 기본방향 / 목표 / 전략
 - 문화도시 기본방향 / 조성목표 / 추진전략

[문화도시 사업추진 구상 및 계획]

- 사업모델 기본개념 및 설계구조(사업개념 및 추진구조의 알고리즘)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 각 사업별 일반 구상 및 계획
(사업 주요내용 / 사업규모 / 프로그램 운영계획 (법적 필수 포함사항) / 투입자원 등 제시)
 - 전략사업 세부구상 및 계획
(일반구상계획의 내용 + 사업구역 / 추진구조 / 추진프로세스 설계 등 제시)
- 사업계획 종합구상도(사업구상계획목록표+사업장소 맵핑도)
- 지정분야 특성화계획 (법적 필수)
- 사업추진 연계계획 (도시사업연계 / 부처사업 연계)

[문화도시 추진체계]

-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구성
 - 도시자체 / 광역 거버넌스 구조 설계 제시
 - 단기-중기-장기 추진 시기별 예상구조 제시
- 문화도시센터 구성
 - 조직위상 및 체계 / 총괄기획자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 / 센터운영예산계획 등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계획 (법적 필수 포함사항) 등

[예산투입계획]

- 사업예산 종합계획
- 사업-예산 투입·운용 로드맵(연차별/종합)
- 사업예산 연계 및 활용계획

[문화도시 추진 성과 및 지속가능 관리계획]

- 문화도시 성과목표 구성 및 달성계획(연차별/각 시기별/종합)
 - 도시정책목표 : 정성적으로 방향 관련 지표를 구성하고 제시
 - 도시사업목표 : 정량적으로 효과 및 산출 관련 지표를 구성하고 제시
- 사업 지속가능 관리계획(사업 기록 / 모니터링 / 환류)
 - 문화도시 사업기록 아카이브 구축계획
 -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문화도시 추진로드맵 구성]

- [문화도시 지정절차 추진로드맵 D-2~1년]
 - 문화도시 지정까지의 각 과정별 업무 및 절차 스케줄 구성
- 예비사업 실행 로드맵 [D-1년]
 - 예비사업 각 부문별 추진계획
 - 사업 성과목표 구성 및 달성계획
 - 추진체계 운영계획(조직 및 거버넌스)
 - 예산투입계획
- 문화도시 지정·활성화 사업 추진로드맵 [D+ 5년]
 - 예비사업 각 부문별 추진계획
 - 사업 성과목표 구성 및 달성계획
 - 추진체계 운영계획(조직 및 거버넌스)
 - 예산투입계획
- 문화도시 중장기 사업 추진로드맵 [D+ 5년 이후 ~10년까지]
 - 추진방향
 - 전략사업 구상
- 문화도시 추진로드맵 종합 구성 및 제시

[부록]

- 도시 일반현황 세부자료
- 문화도시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 광역-기초간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약서

#별첨 3 -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및 지정심의 주요내용

구분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 승인		문화도시 지정심의 - 지정		문화도시 사업중간평가 - 지원결정(선별)
추진 절차	지정신청 /검토의뢰 도시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제출 지자체 ·조성계획 검토의뢰서 제출		지정심의의뢰 도시 ·문화도시 지정심의 지자체 의뢰서 제출		
	검토요건확인 문체부 ·검토 진행요건 확인 (행정/법정사항/제출자료)		심의요건확인 문체부 ·심의절차 진행요건 확인 (행정/계획/결과/제출자료)	도시지정 후	
	조성계획검토 검토단 ·조성계획 내용검토 -타당성/합리성/적절성 등 -서면/발표/현장답사/토론 ·문화도시 자문 및 컨설팅	조성계획 승인 1년이후 지정심의 진행	지정심의 절차진행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 -가치/가능성/실행능력 등 심의 -서면/발표/현장답사/토론 위원회 ·도시지정투표 ·사업지원 결정심의 진행 -내용/규모 등	문화도시 사업추진 2차년도 종료 후 사업 중간평가 진행	향후 실제 사업추진 시 구성예정
	최종판단 문체부 ·검토결과 확인 ·승인여부 최종 판단		최종판단 문체부 ·심의결과 확인 ·도시지정여부 최종 판단		
	조성계획승인 문체부 ·조성계획의 정식 승인		문화도시지정 문체부 ·문화도시 정식 지정		
검토 / 심의 절차 진행 중 제출 자료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의뢰서		·문화도시 지정심의 의뢰서		·사업중간평가 의뢰서
	·문화도시조성계획(도시 자체승인안)		·문화도시조성계획(문체부 승인+ 예비사업결과 반영안)		·문화도시조성계획(최종결정 및 시행안)
	·조성계획 수립 관련 증빙자료 ·도시 기본현황 자료(휴먼-소프트-하드포함)		·예비사업 추진현황 및 이행결과 기록자료 ·도시 기본현황 자료(휴먼-소프트-하드 업데이트) ·문화도시사업의 문화영향평가 결과자료 (도시지자체 자체시행-사전)		·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기록자료 (문화도시 아카이브) ·문화도시사업의 문화영향평가 결과자료 (도시지자체 자체시행-사후)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의결과 행정문서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협약서 ·도시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		·도시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용현황(예비 포함) ·예비사업 실행세부계획(향후 도시지정시까지) ·사업성과목표(안)[지정심의시점까지]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구성 및 운용현황 ·문화도시 지정·활성화사업 실행세부계획(지정 5개년) ·사업성과목표(안)[[문화도시사업 3차년도 시점까지]		·문화도시추진 정식조직 구성 및 운용현황 ·향후 사업 실행세부계획(향후 5개년) ·사업성과목표(안)[지정 10년차 시점까지]

구분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 승인		문화도시 지정심의 - 지정		문화도시 사업중간평가 - 지원결정(선별)	
검토 / 심의 중요 내용	1단계 검토 행정요건 확인		1단계 검토 행정요건 확인		1단계 검토 행정요건 확인	
	·도시지자체 지정대상 행정요건 합치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의결과 행정문서		·조성계획 승인 이후 1년 경과 여부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협약서 구성 유무		·문화도시사업추진 이후 2년 경과 여부 ·도시지자체의 자체 문화영향평가 시행 여부	
	2단계 검토 도시 준비상태 및 추진기반 확보 [Pass or Fail]		2단계 심의 예비사업 실행결과 및 도시 준비상태 [Pass or Fail]		2단계 평가 도시 준비상태 및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조성계획의 작성기준 준수 및 내용항목 만족 여부(법정상항 및 가이드라인 제시사항 포함)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TF 또는 협의체 구성유무 ·예비사업 실행을 위한 도시지자체 예산투입 준비		·예비사업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및 결과 기록 유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체계 구성유무 ·도시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 설치 및 시행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투입 및 조달 준비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여부 ·문화도시 추진과정 기록 아카이브 구축 여부 ·문화도시 사업추진 전문조직 정규운영 여부 (도시문화센터)	
	3단계 검토 계획의 타당성/합리성/적정성 [Pass or Fail]		3단계 심의 문화도시 실현의 능력 및 가능성 [Dliberation]		3단계 평가 문화도시 추진 결과측정 및 지원결정	
	현황 진단	·도시환경 및 활용가능 문화자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진단이 이루어졌는가?	도시 문화경영 및 생태계구축	·예비사업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파악가능한 도시 자원의 문화기획 및 활동 전개 능력과 역량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도시문화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능력 (인적 / 조직적 / 정책적 / 행정적 역량 포함) ·문화가치의 다양성 인정 및 활동가능성 보장 ·문화인재 양성 및 육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구축의 가능성 ·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청년 정주기반 형성 가능성		
	도시 가치	·도시 본연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문화도시 비전 및 핵심가치가 제시되었는가?		·도시자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악가능한 도시 잠재력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 촉진의 가능성 ·문화전문인력 및 창의집단이 활동과 정주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구축의 가능성(문화기획자/예술인/기관 및 단체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문화활동 생성 및 발생의 가능성 ·도시가 보유한 가치자산의 창의적 개발 및 활용 능력 ·도시의 문화가치에 대한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 능력 ·도시의 대표가치이자 철학으로서의 문화브랜드 생성 가능성		
	문화 도시 조성 계획	·문화도시 정책의 지향가치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작성되었는가? ·문화도시를 위한 각 사업 및 프로젝트 계획은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문화도시 추진과정 및 프로세스는 지역특성에 최적화된 과정으로 설계되었는가? ·도시민의 문화참여 확대 및 문화접근성 보장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 및 활동 지원이 포함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문화가치와 사회·경제 활동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도시민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추진 체계	·도시민/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의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체계를 제시하고 있는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독립적 전문조직 구성계획이 구성되어 있는가? ·도시문화의 기획능력을 가진 총괄기획자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투입계획이 구성되어 있는가?	도시 문화력 및 브랜드 경영·관리			
	정책 지원 근거	·도시지자체 정책계획에서 문화도시 추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지역문화계획/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기초간 공동협력방안이 제시되고 있는가? (문화도시 추진의 정책협력 거버넌스)				
	재원 투입 계획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원계획이 구성되었는가?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투입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도시성장 및 발전구조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로서의 성장동력 생성 및 새로운 사회이슈 창출(소셜임팩트)의 가능성 ·문화가치를 통한 새로운 지역생산구조 생성 및 산업·경제에의 기여 가능성(문화를 통한 사회생태계) ·도시문화 생성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장소거점 또는 문화혁신지구 조성의 가능성 ·도시가 보유한 문화자산의 가치보존과 개발·활용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도시적 안목과 계획운영의 능력		
	지속 가능성	·도시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문화도시 추진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가? ·도시의 중·장기적 발전구조에 대한 기여에 대한 방향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업지원근거		
근거	사업지원 가능분야	사업성격
지역문화 진흥법 및 시행령	·지역특화(지역성/특성화) ·도시경영(효과성/창조성)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 ·추진 및 협력체계 ·도시브랜드 관리 (홍보 및 마케팅)	국가 법적지원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가치발굴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국가 정책지원
문화도시 정책	·지역 고유 문화가치와 다양성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실현 ·창의인재 육성 및 지원 ·도시의 문화적 가치자산 활용 ·문화 소프트웨어 중심 가치효과 ·문화정책 및 사업효과 지속 ·사업간 연계 및 복합화 ·문화를 통한 사회경제활성화 ·문화를 통한 장소가치 재창조	국가 정책지원
각 지역 문화정책 계획	·지역별 특성화사업 ·지역 고유정책사업	지역 정책지원

문화적 도시계획 CULTURE PLAN